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2626-10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024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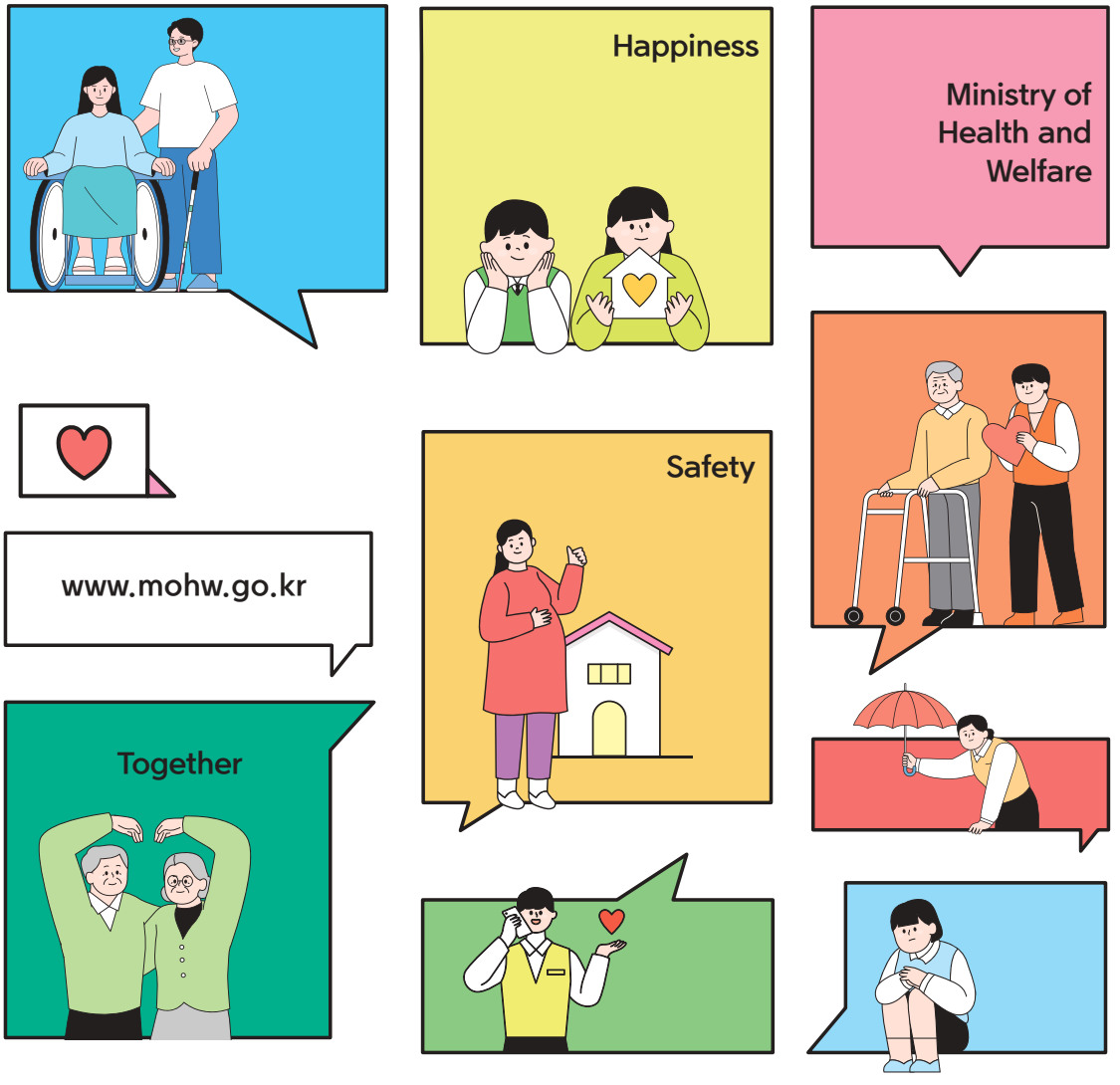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ONTENTS

PART I 개 요

1. 지원개요 ····· 3
2. 주요특성 ····· 4
3. 업무 프로세스 ····· 4

PART II 선정기준

1. 대상자 선정 기준 ····· 9
2. 보장가구의 결정 ····· 9

PART III 조사 및 소득인정액 산정

1. 조사의 개요 ····· 15
2. 2유형군 소득·재산조사 표준화 개요 ····· 16
3. 소득 조사 ····· 25
4.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 26
5. 재산 조사 ····· 29
6.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 32
7. 부채 ····· 48
8. 소득인정액 산정 ····· 49

- 서 식 ····· 51
- 질의응답 ····· 63
- (부록) 2024년 중앙부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안내 ····· 67

2024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안내

2024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안내 주요 개정 사항

<table>
<tr><th>구 분</th><th>2023년</th><th>2024년</th></tr>
<tr><td>Ⅰ.개요

2. 주요 특성
(p.4)</td><td>• (기존제도 우선)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등 기존 보호제도 대상은 제외
* 단, 한부모 지원 가구는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 가능</td><td>• (기존제도 우선)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및 타 차상위 사업*을 지원받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단, 한부모 지원가구는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 가능)
*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타 차상위 지원사업 보장 중지 후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하는 경우 보장기관은 기존의 공적자료만으로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금융재산 조회결과가 도래하기 이전이라도 '차상위계층 확인' 보장결정 가능</td></tr>
<tr><td>Ⅱ.선정 기준

1.대상자 선정기준
(p.9)</td><td colspan="2"><table>
<tr><th>가구규모</th><th>1인</th><th>2인</th><th>3인</th><th>4인</th><th>5인</th><th>6인</th><th>7인</th></tr>
<tr><td>기준 중위소득</td><td>2,228,445</td><td>3,682,609</td><td>4,714,657</td><td>5,729,913</td><td>6,695,735</td><td>7,618,369</td><td>8,514,994</td></tr>
<tr><td>기준중위 소득의 50%</td><td>1,114,222</td><td>1,841,305</td><td>2,357,328</td><td>2,864,956</td><td>3,347,867</td><td>3,809,184</td><td>4,257,497</td></tr>
</table></td></tr>
<tr><td>(p.12)</td><td>나. 별도가구 보장 : 보장가구에서 분리하여 보장하는 개별가구
<중략>
- (자립지원 별도가구)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 '자립지원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 적용 부양의무자' 부분을 준용
<생략></td><td>나. 별도가구 보장 : 보장가구에서 분리하여 보장하는 개별가구
<중략>
- (자립지원 별도가구) 동 보장이 적용되는 취·창업자녀의 기준은 '생계급여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기준' 적용
<이하 전체 변경></td></tr>
</table>

<table>
<tr><th>구 분</th><th>2023년</th><th>2024년</th></tr>
<tr><td>Ⅲ. 조사

2. 2유형군 소득·재산조사 표준화
(p.23)</td><td>[참고] 2유형군 소득재산조사 표준화 목록
• 공제
<table><tr><td>소득 공제</td><td>근로 소득 공제</td><td>만 24세 이하 수급(권)자 근로 및 사업소득</td><td>ㅇ</td></tr></table></td><td>[참고] 2유형군 소득재산조사 표준화 목록
• 공제
<table><tr><td rowspan="2">소득 공제</td><td rowspan="2">근로 소득 공제</td><td>29세 이하 수급(권)자 근로 및 사업소득</td><td>ㅇ</td></tr><tr><td>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 근로 및 사업소득</td><td>ㅇ</td></tr></table></td></tr>
<tr><td>Ⅲ. 조사

4. 소득 유형별 조사방법
(p.27~28)</td><td>나. 근로활동 등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중략>
[유형별 근로·사업소득 공제현황]
ㅇ 만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2023년 기준 : 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중략>
ㅇ 만 2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2023년 기준 : 199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ㅇ 만 75세 이상 노인(1948.12.31. 이전 출생자)
<생략></td><td>나. 근로활동 등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중략>
[유형별 근로·사업소득 공제현황]
ㅇ 29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중략>
ㅇ 2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199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ㅇ 75세 이상 노인(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중략>
ㅇ「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 (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근로·사업소득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td></tr>
<tr><td>Ⅲ.조사
6. 재산 유형별 조사방법
(p.34)</td><td>[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률]
<table><tr><td>지역</td><td>토지가격 적용률</td></tr><tr><td>대구광역시</td><td>0.9(區지역)/0.8(달성군)</td></tr></table></td><td>[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률]
<table><tr><td>지역</td><td>토지가격 적용률</td></tr><tr><td>대구광역시</td><td>0.9(區지역)
0.8(달성군,군위군)</td></tr></table></td></tr>
</table>

구 분	2023년	2024년
(p.41)	다. 자동차 3) 자동차 유형별 반영기준 가)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감면하는 자동차 (1) 자동차 가격 100% 재산 산정 제외 :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다. 자동차 3) 자동차 유형별 반영기준 가)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자동차 (1)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2) 자동차 가격 50% 감면 : 생업용 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가)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 다)-(2)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생업용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 (동 자동차로 인한 소득파악에 철저) (나) 동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므로 수급(권)자의 재산이 기본재산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가격의 50%에 대해서만 월 4.17%의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적용함	(2) 생업용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하는 경우 동 자동차로 인한 소득파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소득파악이 어려운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24년 일 78,880원)에 따라 월 15일 이상을 적용한 임금을 적용 (가)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중형 이하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나)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단, 아래 자동차는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이 아니더라도 승합자동차로 인정 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자동차로서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 자동차 ②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예 : 타우너, 다마스 등) ③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예 : 헌혈, 구급, 장의 등 특수

구 분	2023년	2024년
		한 목적으로 탑승인원이 줄어든 자동차를 말함) (다)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라)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p.42~44)	다)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 가구 특성에 따라 지생보 심의 없이 일반재산으로 인정하는 자동차보유 한도 • 장애인가구 : 재산가액 산정 제외 장애인사용자동차 1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 1대 • 일반가구 : 재산가액 산정 제외 생업용자동차 1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 1대 ※ 장애인가구 : 총 2대까지 인정, 가)-(1) 또는 다)-(1)에서 1대 또는 다)-(2)~(9)에서 1대 일반가구 : 총 2대까지 인정, 가)-(2) 1대 또는 다)-(3)~(9)에서 1대	다)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 가구 특성에 따라 지생보 심의 없이 일반재산으로 인정하는 자동차보유 한도 • 장애인가구 : 2대(장애인사용자동차 1대, 생업용자동차 또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 1대) ※ 가)-(1) 또는 다)-(1)에서 1대와 가)-(2) 또는 다)-(2)~(8)에서 1대 보유 가능 • 일반가구 : 2대(생업용자동차 1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 1대) ※ 가)-(2)에서 1대와 다)-(2)~(8)에서 1대 보유 가능
	(2)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생업용 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삭제>
	(3)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중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중 다음의 자동차 (가) 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 단	(2)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자동차 (가)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중형 이하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구 분	2023년	2024년
	차령 10년 미만이라도 자동차 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차령 산정은 년(年)을 기준으로 <중략> (나)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 병원치료가 필요하나 건강상태 및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 거동 곤란이란 보장구가 있어도 스스로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타인의 도움 없이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 ※ 질병·부상으로 자동차 소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구원의 건강상태 및 병원소재지, 자동차 이용 실태 등 종합적인 고려를 통하여 자동차 소유가 불가피한지 여부 확인 (4) 배기량 2,5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7인승 이상)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가) 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 단 차령 10년 미만이라도 자동차 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동 특례는 국산 자동차에 한정	것)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차령 산정은 년(年)을 기준으로 <중략> (나)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중형 이하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중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 병원치료가 필요하나 건강상태 및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 거동 곤란이란 보장구가 있어도 스스로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타인의 도움 없이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 ※ 질병·부상으로 자동차 소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구원의 건강상태 및 병원소재지, 자동차 이용 실태 등 종합적인 고려를 통하여 자동차 소유가 불가피한지 여부 확인 (다)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p.45~46)	라. 기타 산정되는 재산 1) 개념 •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수급(권)자가 보유하고 있던 일반재산(주거용 재산 포함),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 및 처분(매매, 금융재산감소 등)한 경우 <중략>	라. 기타 산정되는 재산 1) 개념 •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중략>

구 분	2023년	2024년
	2) 조사방법 • 타 재산 증가분 확인 <생략>	2) 조사방법 • 타 재산 증가분 확인 <중략> - 단기간(1년 이내)의 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신용대출(카드론)에 대하여 상환한 금액 ※ 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1년 이내)의 신용대출(카드론)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에는 부채로 인정하지 않음에 유의

I

개 요

1. 지원개요 3

2. 주요특성 4

3. 업무 프로세스 4

Ⅰ 개 요

1 지원개요

- **(지원대상)**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상위의 빈곤층(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으로 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 공공기관 보유자료, 지자체 및 지역단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조사된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 **(지원목적)** 빈곤층에 대한 중층적 보호장치로 소득이 소폭 상승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하더라도 차상위계층으로 연계·지원함으로써 빈곤 완충 역할 수행

  - 최근 **복지사업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되면서 부처별·사업별로 **차상위 파악·확인**에 대한 **요구 증가**

- **(지원내용)** '차상위계층 확인' 책정대상자에 대해 중앙부처 지원사업, 지자체 사업, 민간자원 등 다양한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 중앙부처 지원사업 :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대상 지원사업 이용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부록('2024년 중앙부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안내') 참고

  - 지자체·민간지원 사업 : 희망복지지원단과 연계하여 민간지원 적극 추진

    *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예산사정에 따라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사업 적극 추진

2 주요특성

- **(기존제도 우선)**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및 타 차상위 사업*을 지원받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단, 한부모 지원가구는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 가능)

  *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타 차상위 지원사업 보장 중지 후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하는 경우 보장기관은 기존의 공적자료만으로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금융재산 조회결과가 도래하기 이전이라도 '차상위계층 확인' 보장결정 가능

- **(선정기준 단순화)**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사적이전소득 제외 등 선정기준을 단순화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여부 판단 시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지 여부만 고려

  -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등**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이 곤란한 소득은 **제외**하고 **소득인정액 산출**(부양비,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실제 소득에서 제외)

※ 동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준용

3 업무 프로세스

① 발굴 : 신청대상군 명단 발굴

- **(시·군·구, 읍·면·동)** 학비·급식비 미납가구, 단가스·단수 및 체납가구, 건강보험료 소액납부 및 체납가구, 무허가건물·판자촌거주, 연탄난방,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사례관리대상 등 **지자체 보유 저소득층 명단 활용**

② 대상자 선정, 안내문 발송 및 신청(읍·면·동)

- **(대상자 선정)** 발굴된 대상에 대하여 **사전검토** 후 **안내문 발송 대상가구 선정** (시·군·구 협조)
  - 지자체 보유자료 등 기존 발굴된 가구 등을 확인하여 **중복가구 제거, 누락가구 추가**
  - 발굴된 가구의 가구특성, 자료의 부정확성 등을 확인하여 **보호 불필요 가구 제거**

- **(안내문 발송)** 차상위계층 확인서 신청 안내문 발송

※ 노인가구 등 안내문으로 제도 이해가 불가능한 가구에 대하여는 전화 안내 등 병행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및 구비서류 안내·작성
  - 신청서의 '안내 및 유의사항'을 먼저 민원인에게 설명하여 정보조회 동의 서명을 받은 후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하여 반영

※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을 신청서 접수 이후 5년으로 설정하되 전산적 보존이 이루어진 경우 종이서류 원본은 1년까지 보관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맴버십) 신청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를 동시에 신청하면 수급 가능성 있는 급여를 수시로 안내받을 수 있음을 안내

  * 맞춤형 급여 안내를 희망하는 개인·가구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적극적으로 안내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의 "선택적 동의" 란에서 동의하면 가입할 수 있음을 안내

서민금융지원 등 이용 안내

-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 대상의 정책서민금융상품 관련, "서민금융진흥원" 으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연계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상자와 상담 및 금융서비스 맞춤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제10편 부록 〉 Ⅲ. 서민금융지원 및 채무조정제도 이용안내 참고

③ 조사(통합조사·관리팀)

- **접수된 신청에 대해서 공적자료 조회요청**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가구구성원, 누락된 가구원에 대해 확인 후 공적자료 조회요청 **(금융재산 조회요청 포함)**

- **(행복e음 자료보유자)** 행복e음에 가구원 **모두의 소득재산(금융재산포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차상위계층으로 선정** 가능

  * 단, 2011년 이후 자격이 중지된 대상자의 소득재산정보 활용

  - 다만,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신청 시 행복e음에 보유하고 있는 소득·재산(금융재산 포함) 활용에 대해 안내 및 동의 필요

- **(행복e음 자료미보유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신청토록하고 조회된 소득재산 자료를 반영하여 선정

④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책정(기초생활보장팀)

-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 책정
  - 신청 대상자의 소득·재산 조회 결과를 반영하여 소득·재산기준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책정
  - **(소명신청자의 처리)**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범위인 기준중위소득 50%를 초과하는 자가 소명하는 경우, 통합조사팀에서 이를 반영하여 소득인정액 계산 및 조사자결정을 하고, 이를 반영하여 기초생활보장 담당이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확인·결정

- **(자격반영)**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자격은 자격이 **최종 결정된 날부터 유효**

⑤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 결정 통지(기초생활보장팀)

-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 선정 대상자에 대한 결정 통지서 발급 〈별지 제6호 서식〉
  *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발송 시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부록(‘2024년 중앙부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안내’) 인쇄본 동봉**

⑥ 이의신청

- 이의신청 내용에 따라 조사 관련 이의신청은 통합조사팀에서 처리하고 보장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은 기초생활보장팀에서 수행

-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

⑦ 연계지원(서비스연계팀, 읍면동)

* 각 부처사업은 해당부처 지자체 담당부서와 협조하여 지원연계 진행

- **(읍·면·동)**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 결정된 대상자에 대해 중앙부처 지원사업, 지자체 사업 및 민간자원 연계

- **(서비스연계팀)** 연계된 사업 담당자가 해당 사업별 대상 여부 최종 결정

Ⅱ

선정기준

1. 대상자 선정 기준 9

2. 보장가구의 결정 9

Ⅱ 선정 기준

1 대상자 선정 기준

가. 선정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1)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기준중위소득의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2)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2 보장가구의 결정

가. 보장단위 : 가구단위 보장을 원칙으로 함

1) 보장가구의 범위

가)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 「주민등록법 시행령」제6조제2항 및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은 보장가구에 포함하고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동거인으로 반영

- 단,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은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등재되더라도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임

② 위 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위 ①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외국인 및 사실혼 포함)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외국인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다만, (가)와 (나)의 경우에는 위 ①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여야 함)

(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사실혼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의 '외국인에 대한 특례'와 조건이 다름에 유의

(나)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 미성년 자녀는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함(「민법」 제4조 참조). 양육이란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로 보장시설에 자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양육에 해당하지 않음

(다) 대한민국 국민인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라) 「난민법」제2조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난민법」제32조(기초생활보장)에 따름)

※ 이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난민인정증명서를 제출받아 조사·선정

(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14조의2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아프간 특별기여자로 인정한 사람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 이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제출받고 법무부를 통해 아프간 특별기여자 해당 여부 확인 후 조사·선정

※ 아프간 특별기여자로 인정받아 국내에 체류를 시작한 이후에 태어난 해당 특별기여자의 1촌의 직계비속도 보장가구원에 포함

- 위 ①에 해당하는 자의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단, ①~④의 경우에는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장기관이 판단하면 수급(권)자 가구에서 개별보장 가능(①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②30세 미만의 미혼부·모인 경우 ③30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으로 탈시설 또는 자립을 위해 부모와 주거를 분리하는 경우 ④기타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개별가구 보장이 필요한 경우)

* 30세 미만의 이혼 자녀도 미혼자녀에 해당(단, 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가구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나 형제·자매가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고 있는 경우 보장가구에 포함

나)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2024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준용)

-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보장시설 수급자)
- 실종신고의 절차 진행 중인 자 및 행방불명자
  * 경찰서에 가출·행불신고 후 1개월 경과자(30일로 산정), 법원에 의한 실종선고(절차진행중인)자,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출·행불 사실을 확인한 자(사실조사보고서 첨부)
-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
-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
  * 단, 상근예비역(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 중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는 보장가구에 포함
- 교도소·구치소·유치장·치료감호시설·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수용 중인 사람
-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 영주권자

"재외국민"은 보장가구에서 제외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 귀국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이하 "재외국민"이라 함)은 귀국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더라도 보장가구에 포함하지 않으며 수급권자로 신청·접수하지 않음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과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다) 가구범위 확정 절차

-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자(세대원)를 조회하여 일괄 등록
-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및 상담을 통해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사람 중 동일 보장가구에 포함할 구성원 추가
- 보장가구에서 제외할 가구원을 확인하여 삭제

라) 보장가구 내 개인단위 보장 수급자가 있는 경우

- 차상위계층 확인서 신청 가구 중 기초수급자 및 타 차상위지원제도(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등) 개별보호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 가구단위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선정하되,
  - 기초수급자 및 타 차상위지원제도 개별보호대상자를 제외한 가구원에 대해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차상위계층 확인서 신청 가구 중 교육급여수급자가 있는 경우에는,
  - 별도의 소득·재산조사를 하지 않고 교육급여수급자를 제외한 가구원에 대해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교육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대상자(부모 등)로 이루어진 동일 보장가구에서 교육급여수급자가 졸업 또는 학업을 중단하여 교육급여자격이 중지된 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보장기관은 기존의 공적자료만으로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금융재산 조회 결과가 도래하기 이전이라도 대상자를 보장결정가능

나. 별도가구 보장 : 보장가구에서 분리하여 보장하는 개별가구

- 급여위탁 별도가구,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자립지원 별도가구 등 별도가구 보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를 준용
  - (자립지원 별도가구) 동 보장이 적용되는 취·창업자녀의 기준은 '생계급여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기준' 적용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가) 공통적용 : 취·창업자녀 1인당 6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동 보장 적용
(나) 생계급여 : '개별 보장 대상자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
(취창업자녀의 자녀를 포함하여 가구원 수 산정 가능)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3,788,357원	6,260,435원	8,014,917원

- 재산기준(금융재산 및 부채는 적용하지 않음)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5억원	2.5억원	2.2억원

※ 소득 또는 재산기준 초과 시 보장 불가하며, 기준이 적용되는 소득 및 일반재산의 종류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와 동일(다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와 달리 「지방세법」제124조에 따른 자동차는 재산에 반영)

다. 기타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군 전역(예정) 수급권자 보장특례,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수급자 특례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준용

Ⅲ

조사 및 소득인정액 산정

1. 조사의 개요 15
2. 2유형군 소득 · 재산조사 표준화 개요 16
3. 소득 조사 25
4.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26
5. 재산 조사 29
6.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32
7. 부채 48
8. 소득인정액 산정 49

Ⅲ 조사 및 소득인정액 산정

1 조사의 개요

가. 일반원칙

- 자산조사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통보)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스템으로 통보되는 소득·재산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원칙적으로 자동 반영되나, 보유 여부만 통보되어 가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은 조사·확인 후 반영
    * 공적자료의 변동으로 자격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자격정지 등 처리 (자격정지 1개월 전 사전안내를 통해 소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통보되는 인적정보 변동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의 변동사항 확인항목 및 처리사항을 준용하여 처리
  * 사망, 말소, 현지이주자, 이민출국자, 국적상실자, 거주불명등록자, 출입국만료보장중지, 군입대, 군제대, 교정시설입소, 교정시설퇴소, 사망의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재등록대상자

- 자격 변동(정지, 상실 등) 시점은 '사유 발생일'로 적용
  - 다만, 기존 신고된 소득·재산 자료의 변동(임금의 인상, 재산의 가액증가 등 단순변동을 의미)인 경우에는 변동이 확인된 날로 적용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소득·재산 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공적자료 제공 기관의 자료를 수정하도록 하고 입증자료 제출 시 수정결과 적용
  * 이 경우 반드시 증빙자료를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

- 자격 여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소득·재산 등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실시**

2 2유형군 소득·재산조사 표준화 개요

① 개요

- (유형군 분류)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는 복지부 내 주요 복지사업을 사업목적, 대상자 범위, 급여성격을 고려하여 4가지 유형군으로 분류

구 분	대상사업
1유형군 (기초생활보장사업군)	최저생활보장을 위하나 보충급여로 엄격한 자산의 조사가 필요한 사업 유형
2유형군 (차상위사업군)	**차상위계층의 지원을 포함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사업 유형**
3유형군 (기초연금형사업군)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지만 상대적으로 기준선이 높아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하는 사업이 포함되는 등 보편적인 지원에 가까운 사업 유형
4유형군 (바우처형사업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소득의 판정기준으로 활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등 대규모의 대상자를 신속하게 선정할 수 있는 사업 유형

② 유형군별 대상사업목록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은 **'2유형군'**에 해당

구 분	사업목록	시행시기
1유형군 (기초생활보장사업군)	기초생활보장사업(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21.1~
2유형군 (차상위사업군)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자활사업, 차상위자산형성지원사업, 차상위장애(아동)수당 *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사업은 '21.1월부터 시행	'21.7~
3유형군 (기초연금형사업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21.1~
4유형군 (바우처형사업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사업,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사업, 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사업,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취학전아동실명예방사업, 치매검진비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	'22.1~

※ 기타 미분류된 중앙부처사업 및 지자체사업은 5년간 순차적으로 적용예정

③ 소득재산조사항목

- 제2유형군

구 분	주요조사항목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재산	건축물/주택/토지, 회원권, 금융재산
공제	만성질환자 3개월이상 지출의료비, 만65세이상 근로 및 사업소득, 장애인근로 및 사업소득, 금융재산 공제 등
부채	대출금, 임대보증금, 법원인정사채

참 고 **2유형군 소득재산조사 표준화 목록**

- **소득**

중분류	소분류	상세분류명	2유형군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상시근로자소득	O
	일용근로자소득	일용근로자소득	O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O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참여소득	O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소득	O
		공공근로소득	O
	국외근로소득	국외근로소득	X
사업소득	농업소득	농업소득	O
		축산소득	O
	임업소득	임업소득	O
	어업소득	어업소득	O
	기타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O
	국외사업소득	국외사업소득	X
재산소득	임대소득	임대소득	O
	이자소득	이자소득(국세청)	X
		이자소득(금융기관)	O
		배당소득(금융기관)	O
	연금소득	연금(개인)소득	O
		주택연금	O(0.5)
		농지연금	O(0.5)
	국외재산소득	국외재산소득	X

중분류	소분류	상세분류명	2유형군
기타소득	사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X
		무료임차료(사용대차사적이전소득)	X
		외국인 배우자 소득	X
	부양비	부양비	X
		기초생계급여부양비	X
		기초의료급여부양비	X
	공적이전소득	국가유공자급여(보상금)	O
		국가유공자급여(간호수당)	X
		국가유공자급여(무공영예수당)	X
		국가유공자급여(기타)	O
		독립유공자급여(보상금)	O
		참전명예수당	X
		고엽제후유의증수당	X
		국민연금급여	O
		사학퇴직연금급여	O
		공무원퇴직연금급여	O
		군인퇴직연금급여	O
		별정우체국연금	O
		실업급여	O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O
		산재보험급여(장해급여)	O
		산재보험급여(유족급여)	O
		산재보험급여(상병보상금)	O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금	X
		장애수당	X
		장애아동수당	X
		소년소녀가정지원금	X
		아동양육비(한부모)	X
		가정위탁양육보조금	X
		입양아동양육수당	X
		장애아동입양양육수당	X

중분류	소분류	상세분류명	2유형군
		지자체지원(이·통장직책수당)	X
		지자체지원(출산·고령화관련수당)	X
		지자체지원(교통수당)	X
		지자체지원(보훈대상자추가지원)	X
		지자체지원(복지대상자추가지원)	X
		직업훈련수당	X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지원금(재활보조금)	X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지원금(피부양보조금)	X
		장애인연금	X
		육아휴직수당	O
		한센인피해자생활지원금	X
		진폐위로금	X
		추가아동양육비(한부모)	X
		자립지원촉진수당(한부모)	X
		경기력향상연구연금(국민체육진흥공단)	X
		국가유공자급여(부양가족수당)	X
		국가유공자급여(중상이부가수당)	X
		대일항쟁기피해자(희생자)의료지원금	X
		석면피해자요양생활수당	X
		기초연금	O
		경영이양 소득보조금	X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X
		진폐보상연금	O
		진폐유족연금	O
		체육유공자연금수당	X
		구직촉진수당	X
		기본형공익직불금	X
		공적이전(기타지원)	X
	국외기타소득	국외기타소득	X
보장기관 확인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X

- **재산**

중분류	소분류	상세분류명	2유형군
일반재산	건축물	건축물(건물)	O
		건축물(시설물)	O
		건축물(기타)	O
	주택	주택	O
	토지	토지(밭)	O
		토지(논)	O
		토지(대지)	O
		토지(임야)	O
		토지(기타)	O
	임차보증금	전월세보증금	O(0.95)
		상가보증금	O
	선박/항공기	선박	O(3.5)
		항공기	O(3.5)
	동산	가축	X
		종묘	X
		기계,기구류	X
		기타	X
		건설기계	O
	어업권	어업권	O
	입목재산	입목재산	O
	조합입주권	조합원입주권	O
	분양권	분양권	O
	회원권	골프회원권	O
		콘도미니엄회원권	O
		승마회원권	O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O
		요트회원권	O

중분류	소분류	상세분류명	2유형군
	리스자동차 보증금	리스자동차 보증금(국기초, 차상위)	X
	기타(증여)재산	기타(증여)재산_일반	O
	국외일반재산	국외신고일반재산	X
금융재산	기타(증여)재산	기타(증여)재산_금융	O
	금융재산	요구불예금	O
		저축성예금	O
		증권거래	O
		보험증권	O
		1년이내 지급된 보험금	O
		비상장주식	O
		자산형성사업통장	X
	기타일시금	국민연금급여(반환일시금)	O
		군인퇴직연금급여(퇴직일시)	O
		보훈대상자보상급여(사망일시금)	O
		사학퇴직연금급여(퇴직일시금)	O
		별정우체국연금(퇴직일시금)	O
		산재보험급여(사망일시금)	O
		실업급여(조기취업수당)	O
		공무원퇴직연금급여(퇴직일시금)	O
		기타일시금	O
	국외금융재산	국외신고금융재산	X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	O
		리스자동차	O

• 공제

중분류	소분류	상세분류명	2유형군
소득공제	가구특성별 지출	장애수당	X
		장애아동수당	X
		고엽제후유증 중 중증장애인수당	X
		소년소녀가정지원금	X
		아동양육비(한부모)	X
		입양아동양육수당	X
		장애입양아동양육보조금	X
		만성질환자 3개월이상 지출 의료비	O
		중고등학생 입학료 및 수업료	O
		국민연금 본인부담보험 75%감면	O
		가정위탁양육보조금	X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지원금(재활보조금)	X
		보육료, 유치원교육비, 대학생 학비	X
		근로무능력자(직계존속비 제외)와 함께 거주하는경우, 해당하는 기준중위소득의 40%	X
		신용회복위원회, 법원의 판결에 의한 채무변제액	X
		장애인연금	X
		부양의무자교육비표준공제	X
		추가아동양육비(한부모)	X
		자립지원촉진수당(한부모)	X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지원금(피부양보조금)	X
		부양의무자의 본인 거주용 월세	X
		요양기관 이용료 및 생활시설 유료실비 이용료	X
		희귀난치성질환자 호흡보조기 기침유발기 대여료 및 간병비	O
		만성질환자 3개월이상 지출 의료비 및 간병기관 간병단체 간병비	X

중분류	소분류	상세분류명	2유형군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등	X
		바우처사업 본인부담금	X
		국제경기대회 입상 장애인의 경기력향상연구연금	X
		이자소득공제	X
		학자금대출 채무변제액	X
		임대소득 경비율 공제 (기초연금,장애인연금,아동수당)	X
		참전명예수당(1인가구 기준중위소득20%이하)	X
		12개월 초과 이자소득 추가공제분	O
		학생 기숙사비, 월세비용	X
		장애인기능올림픽 입상자 기능장려금	O
		부양의무자 양육비	X
		가구특성별지출기타	O
	근로소득공제	자활근로소득	X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참여소득	O
		자활공동체참여소득	X
		행정인턴	O
		(노인)상시근로소득	X
		(노인)일용근로소득	X
		만18세미만 청소년의 근로 및 사업소득	O
		만65세이상 근로 및 사업소득	O
		장애인 근로 및 사업소득	O
		북한이탈주민의 근로 및 사업소득	O
		29세 이하 수급(권)자 근로 및 사업소득	O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근로 및 사업소득	O
		사회복무요원 및 상근예비역 근로 및 사업소득	O
		자립적립금(시설수급자)	X
		학생(휴학생)이 얻은 근로 및 사업소득	O
		대학생 근로사업소득 등록금 지출	O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 근로 및 사업소득	O

중분류	소분류	상세분류명	2유형군
	농어민가구 특별공제	보육료(농어민가구)	O
		대출상환액중 이자비용50%(농어업-부채환산액)	O
		경영이양 소득 보조금	X
		친환경 농업소득 보조금	X
		기본형공익직불금-1ha미만	X
일반재산 공제	농어민가구 특별공제	500만원 이내의 농지,가축,종묘,농기계 등	O
	자연감소분	일반재산 자연감소분	O
금융재산 공제	장기저축	장기저축	O
	생활준비금	생활준비금	O
	자연감소분	금융재산 자연감소분	O
	한센인피해자 국가보상금	한센인피해자 국가보상금	O
	특별재난지역선포 등 보상금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보상금	O

- **부채**

중분류	소분류	상세분류명	2유형군
부채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O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O
		신용카드 연체금	X
		자동차 리스 및 할부 잔액	X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	O
	개인간사채	공정증서에 의한 사채	X
		법원인정사채	O
	공공기관대출금	농지연금	O
		주택연금	O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국민연금 실버론)	O
	국외부채	국외부채	X

3 소득 조사

가. 소득의 의미

- 대상자 선정기준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
  -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

- 조사대상인 소득항목에서의 소득은 **"실제소득"을 의미**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유인요인 - 그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

나. 실제소득의 범위

- 실제소득에 포함하는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농업, 어업, 양식업, 임업, 기타 사업), 재산소득(임대, 이자(금융기관), 연금소득, 주택연금, 농지연금), 공적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

- 공적이전소득 반영 항목
  ①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퇴직연금, 군인퇴직연금, 사학퇴직연금, 별정우체국연금)
  ② 실업급여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④ 보훈급여(국가유공자 보상금·기타, 독립유공자 보상금)
  ⑤ 기초연금
  ⑥ 육아휴직수당
  ⑦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 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4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가. 소득 산정기준(2024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준용)

- 상시근로소득[1],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및 양식업, 기타 사업소득), 이자소득[2], 임대소득
  -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평균한 소득(금액)'을 반영
    * 100인 이상의 사업장의 건강보험료는 월별로 갱신될 수 있음에 유의
  - 단, 기타 사업소득 금액에 변동이 있거나, 또는 수급자가 이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 평균 소득 반영 가능(단, 이러한 경우에는 대상자가 매월 보장기관에 직접 소득신고 이행 필요)

  ※ (주의) 동일한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면서 월 보수만 변동되는 경우(군인 등)는 전월 소득이 아닌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평균소득을 반영

- 일용근로자소득
  -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 반영

  ※ 임시, 일용직 근로자 및 영세 자영자는 적정한 소득 파악 및 관리를 위해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을 반영함. 단, 확인조사 시 조회되는 일용근로소득은 6개월 평균소득으로 반영

- 근로 및 사업운영 등 상태가 변경(신규취업, 이직, 휴직, 실직, 퇴직, 휴직, 복직, 폐업 등)된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된 월부터 변경된 상태를 반영하여 소득액을 산정

- 그 외 소득(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 '전월 소득' 반영

---

1) 조회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 자료가 확인될 경우 다음 순서대로 반영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② 근로복지공단 자료(직장가입자 월평균보수)는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순서로 반영됨
   ※ 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순서로 반영됨
   ③ 국민연금공단 자료 (직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자료
   ⑤ 국세청 자료(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2)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 등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이자소득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조회되는 이자소득으로 연 10만원 이하의 이자소득은 제외
- 이자소득 발생 적금·저축 등의 가입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상품인 경우 초과된 개월수(월단위산정)만큼 연간 최대 24만원(월2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 공제

나. 근로활동 등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 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

- 다만,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공제율을 적용함(본인이 유리한 기준 선택 가능)

• 하나 이상의 근로소득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
•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은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유형별 근로·사업소득 공제 현황]

공제 대상 수급(권)자	공제대상 소득	공제방법 및 공제율	비고
• 등록장애인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50% 추가공제	주1 참조
• 29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대학생	근로·사업소득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주2 참조
•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아동시설입소 및 가정위탁보호중인 기간은 당연 포함) 자립준비 청년	근로·사업소득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2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199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근로·사업소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주3 참조 주4 참조
• 75세 이상 노인 (1949년 12월 31일.이전 출생자) • 북한이탈주민	근로·사업소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주5 참조

공제 대상 수급(권)자	공제대상 소득	공제방법 및 공제율	비고
• 등록장애인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 참여자	행정인턴 참여소득	30%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청소년한부모(24세이하) (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근로·사업소득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근로소득 공제 적용 시 유의사항**

※ 주1)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은 「장애인복지법」제58조 및 제5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을 의미하며, '정신질환자직업재활사업'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정신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을 의미

※ 주2) 대학생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의미하며, 야간대생을 포함하고, 「평생교육법」제31조, 제32조, 제33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학사 및 학사 이상의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정규대학생(사이버대학생, 학점은행제 대학생)도 근로소득 공제 적용

- 대학생이 휴학·졸업유예 시 최대 1년까지 근로소득 공제 적용하며 군복무기간은 기간에 미산입

※ 주3) 초·중·고등학생이란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교육급여 지급 대상과 동일

※ 주4) 범정부 "청년고용활성화 대책" 마련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 주5) 북한이탈주민은 특례보장 기간 중에만 인정. 특례기간 종료 시 일반수급자에 해당

5 재산 조사

가. 재산의 종류

1) 일반재산

(가) 일반재산의 범위(주거용재산 포함)

-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논·밭·임야 등), 건축물(건물·시설물 등) 및 주택(제104조 제1호, 2호, 3호)

  - 단,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

    ※ 종중재산, 마을공동 재산 등 공동재산은 공동명의로 변경 등기 완료시 그 지분만큼 재산으로 산정하고, 타인에게 명의 변경 시 재산산정에서 제외

    ※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받은 경우 재산산정에서 제외하고, 이 경우 공동재산에서 발생하는 금융재산은 단체의 재산으로 보아 재산산정에서 제외함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지방세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제104조 제4호 및 제5호)
- 동산(건설기계)
- 지방세법에 의한 입목재산(제6조 제11호)
- 지방세법에 의한 회원권(제6조 제14호~제18호)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 소득세법에 의한 조합원 입주권(제89조제2항)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 지방세법에 의한 어업권 및 양식업권(제6조제13호,제13의2호)

(나) 주거용 재산

※ 일반재산 중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은 일정 한도 내에서 주거용재산으로 분류하고, 별도의 소득의 재산환산율 적용함에 유의

- 범위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및 그 부속토지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이외에도 일용품 등의 소매점, 미용원 등 해당 재산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조사대상 가구원이 거주하는 것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및 부속토지, 임차보증금이 없는 경우 1호에 한해 인정)

- 적용한도
  - 조사대상 가구원이 해당 재산에 거주하는 경우 1호(또는 세대)에 대하여 아래 표의 한도까지만 주거용재산으로 인정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17,200만원	15,100만원	14,600만원	11,200만원

  -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가액 등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으로 산정

    * (예시) 세종시에서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1억5,600만원 주거용재산 보유 시
    ① 주거용재산 적용한도인 1억4,600만원을 초과하는 1,000만원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② 남은 주거용재산 1억4,600만원 중 세종시의 기본공제액인 7,700만원을 차감
    ③ 차액 6,900만원은 주거용재산 환산율 적용 (순서에 유의)

2) 금융재산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3)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나. 재산의 조사범위

- 조사대상 가구원 명의의 재산을 조사
  - 단, 군복무, 해외체류, 교도소 등 수용, 보장시설 입소, 실종, 가출, 행방불명, 사망 등의 사유로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 명의의 재산을 보장가구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수급(권)자의 재산에 포함

다. 재산가액 산정기준

• 재산가액은 공적자료에 의한 가격을 원칙으로 하여 적용

재산 항목		산정 기준
일반 재산	• 토지, 건축물, 주택	(지방세법)시가표준액
	• 임차보증금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주택의 경우 보정계수 0.95〉
	• 선박, 항공기	(지방세법)시가표준액×보정계수(3.5)
	• 동산	조사일 현재 시가 (신고가액)
	• 입목재산	(지방세법)시가표준액
	• 각종 회원권	(지방세법)시가표준액
	• 어업권 및 양식업권	(지방세법)시가표준액
금융재산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금융재산별 가액, 금융회사등의 입증자료상의 가액
자동차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등을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정보

참 고 **지방세법상 재산종류별 과세기준 산정방식**

재산종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토 지			표준공시지가 (국토교통부, 1㎡당)	표준지공시지가×면적
			개별공시지가 (시장·군수·구청장, 1㎡당)	개별공시지가×면적
건축물	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 (국세청,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국세청, 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 (국토교통부)	표준주택가격 (국토교통부)
			개별주택가격 (시장·군수·구청장)	개별주택가격 (시장·군수·구청장)
	건물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설물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선박/항공기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입목재산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회원권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어업권 및 양식업권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6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가. 일반재산

1) 주거용재산 (주거용재산 환산율 월 1.04% 적용)

일반재산 중 주거용 재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

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 정의 : 건축법(제2조제2항제1~2호)에 의한 단독주택·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 주택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주택 및 그 부속토지
- 조사방법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나)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 정의 : 단독주택·공동주택, 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등)
- 조사방법 : 임차보증금 조사방법에 따라 조사

  * 주택 임차보증금이므로 적용률 0.95를 적용함에 유의

다) 기타 거주를 목적으로 한 재산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정의 : 일용품 등의 소매점, 미용원 등 해당 재산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및 부속토지, 임차보증금이 없는 경우 1호에 한해 인정)
- 조사방법

① 조사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지방세법상 건축물(건물, 시설물) 등에 대한 정보를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주거용재산에 방문하여 조사

② 해당 재산에 대한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주거용재산으로 산정

  * 주거용재산 한도액까지만 인정

2)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 반영)

- 토지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결과를 토대로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함께 제공되는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토지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제시되며, 적용률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동 적용

- 건축물

  - 건물, 시설물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 주택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주택, 공동주택, 비주거용 건물(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등)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 건축물, 주택은 적용률 없이 시가표준액 바로 적용

참 고 **토지가격 적용률**

토지가격 = 시가표준액 ÷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률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률]

지 역	토지가격 적용률
서울특별시	0.9(전지역)
부산광역시	0.9(전지역)
대전광역시	0.9(전지역)
인천광역시	0.9(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0.8(중구, 동구, 연수구, 옹진군)
대구광역시	0.9(區지역) / 0.8(달성군, 군위군)
광주광역시	0.9(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 0.8(남구)
울산광역시	0.9(區지역) / 0.8(울주군)
세종특별자치시	0.8(전지역)
경기도	0.9(수원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김포시) 0.8(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양주시, 여주시, 화성시, 광주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0.7(용인시의 처인구) / 0.6(용인시의 기흥구, 수지구)
강원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충청북도	0.9(청주시 洞지역, 충주시 洞지역, 제천시 洞지역,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0.8(청주시 邑·面지역, 충주시 邑·面지역, 제천시 邑·面지역, 옥천군, 진천군, 음성군, 증평군)
충청남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전라북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전라남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경상북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경상남도	0.9(창원시 洞지역, 진주시 洞지역, 사천시 洞지역, 김해시洞지역, 거제시 洞지역, 통영시, 밀양시, 양산시) 0.8(창원시 邑·面지역, 진주시 邑·面지역, 김해시 邑·面지역, 사천시 邑·面지역, 거제시 邑·面지역,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제주특별자치도	0.9(전지역)

※ 토지가격 적용률(실거래가격 대비 시가표준액의 비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을 위한 재산가액 산정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행정내부 자료임

3) 주거용 이외 임차보증금

- 대상자가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 점포 등 임차보증금을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등)를 제출받아 확인하여 반영
  -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권 설정한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함
- 임차보증금 중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전·월세는 적용률(0.95)을 곱하여 산출

주택 임차보증금 = 전월세계약서 상 임차보증금 × 적용률(0.95)*

* 주택은 시가표준액으로 적용되나, 전월세는 시가로 산정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월세보증금 가액산정에 적용률을 곱하여 5%를 공제함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계약서상의 전월세보증금을 입력하면, 적용률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동 반영

- 유효기간이 만료된 임대차계약서는 무효이지만,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2개월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 없이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만료 전 2개월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인정(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디딤씨앗통장 저축액을 수령하여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한 경우 24세까지 산정제외

4) 선박·항공기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에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가격 산정

선박·항공기 가격 = 시가표준액 × 보정계수(3.5)*

* 지방세정의 선박, 항공기 과세표준액이 시가의 약 20%이므로 시가의 70% 수준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보정계수 3.5를 적용(매년 과표현실화율에 따라 보정계수는 조정)

5) 동산

- 가축·종묘·귀금속, 기계·기구류 및 기타 동산은 일반재산의 범위에서 제외
- 불도저, 굴착기, 로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기중기, 롤러 등 건설기계는 동산으로 일반재산에 포함(단,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12톤 이상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은 동산에서 제외하고 자동차로 분류)

6) 입목재산

- 입목재산은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

7) 회원권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골프장, 콘도미니엄, 헬스클럽, 승마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요트회원권 등에 대한 소유여부 확인 및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

8) 조합원입주권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조합원입주권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관리처분 계획 등 입증자료를 개별 징구하여 기존 건물의 평가액에 청산금을 정산한 금액(분양가액)을 반영
  -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기존 건물평가액)에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 건물평가액에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9) 분양권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분양권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중도금 납입현황 및 개별가격을 조사 후 파악된 금액(조사일 현재까지 계약금, 중도금 등 불입한 금액)을 반영

10) 어업권, 양식업권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어업권, 양식업권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

나. 금융재산 (금융재산 환산율 월 4.17% 반영)

1) 조사방법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보험정보 포함) 조회결과를 적용

2) 금융정보 등 조회

- 법률상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 조사대상자 : 가구원

※ 신청조사 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징구

- 조회범위 및 산정기준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 3개월 이내 평균잔액 및 입금액 총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ISA계좌도 잔액 또는 총납입액을 산정기준으로 함

- 주식(비상장주식 포함), 수익증권, 출자금, 부동산(연금)신탁, 출자지분, 펀드, 양도성예금증서 예수금, 선물옵션 : 최종시세가액

※ 다만,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하되, 평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적용함

* 비상장주식은 금융기관을 통해 일부 입수되며 평가금액이 있는 경우 평가금액을, 없으면 액면가액으로 반영('17.5월 이후 국세청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의 양도/양수정보를 수신)

* 공적자료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자진신고 안내를 통해 액면가액을 적용하되, 명의신탁, 휴폐업 등의 경우 본인 소명에 따라 조치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펀드, 양도성예금증서(CD), 예수금, 선물옵션도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되고 있음을 유의

-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연금보험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연금상품(보험, 저축, 신탁)은 연금 개시 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월 수령액이 조회되며, 연금소득으로 산정

※ 사유가 발생하면 청구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성보험 성격 (예 : 개인연금, 유족연금 등)은 월평균 수령액으로 계산하여 소득으로 반영하나,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청구하여 지급되는 보장성보험 성격(예 : 교통사고보험, 민간 건강보험 등)의 수령액은 일시금에 해당하기에 금융재산으로 반영함

- 조회기준 금액 : 계좌당 10만원 이상

  ※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상품(보험, 저축, 신탁)의 월 수령액은 모든 금액 조회

- 조회절차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출 → 시·군·구(읍·면·동)에서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 → 중앙 전담기관에서 금융기관 등에 일괄 조회 실시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 결과 확인

- 조회주기 및 기준일

  - 신청조사 : 신청 시 특정 월·일 기준으로 조회 실시
  - 확인조사 : 연 2회 조회 실시

- 유의사항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출 및 시스템 입력 시, 조사대상 가구원과 동의서를 제출한 가구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을 반드시 확인하여 일치시키도록 함
  -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여부를 확인 후 고지
  - 금융정보 등 조회 내역 누설 시 법에 따라 처벌 됨

    ①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자(위임·위탁 포함)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 등을 법이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② 금융정보 제공 누설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③ 신용·보험정보 제공 누설 시 3년 이상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3) 조회결과 적용

- 조회된 금융재산은 원칙적으로 예금주(조사대상자) 명의의 재산으로 적용

  - 금융재산(부채 포함)은 계좌에 있는 자금의 출처·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조회 결과대로 적용

    ※ 가령 대출금이 평균잔액으로 조회되거나 각종 연금 및 보상금 등이 금융재산에 포함되어 조회되는 경우 등 그 원천을 고려하지 않음

- 차명계좌 또는 도명계좌라고 주장하는 경우 처리방법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금융실명거래법상의 예외를 인정하여 재산산정에서 제외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차명·도명계좌임을 판결 받은 경우

    ② (차명계좌) 금융실명거래법을 위반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차명으로 인정하고 금융재산에서 제외

    ③ (도명계좌) 수사기관에 도명 해당자에 대한 고발을 하고 수사를 통해 도명한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질 경우 금융재산에서 제외

[일반·금융재산 중 공제대상 및 공제기준]

(1) 금융재산

(가) 생활준비금공제 : 가구당 500만원 공제

- 의료비, 관혼상제비 및 기본적인 생활준비금 등을 고려하여 가구당 500만원은 금융재산 산정에서 제외

(나)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 공제 : 가구당 연간 500만원 한도, 총한도 1,500만원 공제

- 정기예금·적금, 주택부금, 저축성 보험, 펀드, 연금신탁 중 3년이상 가입상품에 해당하는 금융재산(ISA계좌 포함)
  * 금융재산 조사 시 3년 이상 가입상품은 별도로 표기되어 통보됨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가입기간이 3년 또는 5년인 상품으로 장기금융저축공제 대상에 해당함
- 개별상품에 관계없이 금융재산 조사결과에 따라 연간 한도 내(잔여한도는 다음 연도로 이월)에서 총액변동분을 반영

(다)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1·2,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1·2, 청년내일저축계좌), 디딤씨앗통장 가입기간 중의 통장 가입액

(라) 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이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자립정착금

※「범죄피해자보호법」제17조에 따른 유족구조금 및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의 수령금액 중 사용 후 잔여금액에 대한 공제는 2016년부터 삭제

- 다만, 2015년 12월말 이전 기적용한 경우는 계속 적용 가능

(2) 일반재산

(가) 주택연금 가입 주택에 대한 주거용재산 공제

- 주택연금 가입 주택에 대해서는 주거용재산 한도액까지 공제

【주거용재산 한도액】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17,200만원	15,100만원	14,600만원	11,200만원

※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주거용재산 공제 후 잔여가액은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4.17%를 적용

4) 기타 일시금 처리 방안

- 대상 일시금의 종류
  - 퇴직금 :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 사망일시금 : 산재보험급여, 보훈대상자 명예수당·보상급여
  - 반환일시금(국민연금급여), 조기취업수당(실업급여)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보상금
  -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
- 일시금의 확인 및 반영 기준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른 적용대상 일시금은 예금 등의 금융재산으로 보유여부를 우선 확인
  - 동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는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정하고, 기타 산정되는 재산의 조사방법에 따라 반영

    ※ 기타 산정되는 재산의 조사방법인 타 재산 증가분 확인, 본인소비분 확인, 자연적 소비금액 확인을 동일하게 적용

용 도	증 빙 서 류
일시금의 출금 확인	일시금 입출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사용처를 명백히 제시	기타 산정되는 재산의 조사방법에 따라 타 재산 증가분 확인, 본인소비분 확인을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채상환증명서, 의료비 영수증 등

- 대상자가 기타 일시금을 예금 등의 금융재산으로 보유 시 이중으로 반영되지 않도록 유의

다. 자동차 (환산율 월 100%)

1) 조사방법

-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제공되는 자동차가액정보를 반영

  ※ 자동차 가액 평가 기준 우선순위 : (1순위)보험개발원, (2순위)지방세정, (3순위) 국토교통부 최초취득가액(*잔가율) >취득가액(*잔가율), (4순위)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

• 전기자동차인 경우 조회된 자동차가액에서 보조금(환경부·지자체)을 차감하지 않으며, 자동차 처분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자동차 처분에 따른 기타 산정되는 재산 산정 시 해당 보조금을 부채(공공기관 대출금)로 산정하고 동시에 타재산증가분(부채상환)으로 차감

2) 조회결과 적용

• 자동차 분실·도난 시 '자동차말소등록증'을 제출한 경우 재산산정에서 제외

※ '차량도난확인서' 제출만으로는 재산산정 제외 불가

3) 자동차 유형별 반영기준

가)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자동차

(1)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가) 적용대상 : 다음 ①~③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중형 이하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1대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수급(권)자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 1~3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수급(권)자

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상이등급 1~3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수급(권)자

(나) 상기 (가)의 ①~③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 본인 명의의 자동차 1대 (배기량, 차종, 운전자를 구분하지 않음)

(2) 생업용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하는 경우 동 자동차로 인한 소득파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 소득파악이 어려운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24년 일 78,880원)에 따라 월 15일 이상을 적용한 임금을 적용

(가)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중형 이하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나)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단, 아래 자동차는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이 아니더라도 승합자동차로 인정

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자동차로서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 자동차

②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예 : 타우너, 다마스 등)

③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예 : 헌혈, 구급, 장의 등 특수한 목적으로 탑승인원이 줄어든 자동차를 말함)

(다)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라)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나)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월 100% 적용하는 자동차

- 적용대상 : 수급(권)자 명의의 「지방세법」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하단 "다)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 타인명의의 자동차를 수급(권)자가 상용시에도 자동차재산 기준 적용

다)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 **가구 특성에 따라 지생보 심의 없이 일반재산으로 인정하는 자동차보유 한도**

- 장애인가구 : 2대(장애인사용자동차 1대, 생업용자동차 또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 1대)
  ※ 가)-(1) 또는 다)-(1)에서 1대와 가)-(2) 또는 다)-(2)~(8)에서 1대 보유 가능
- 일반가구 : 2대(생업용자동차 1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 1대)
  ※ 가)-(2)에서 1대와 다)-(2)~(8)에서 1대 보유 가능

■ **지생보 심의를 거쳐 보유 한도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4) 3륜이하 소형자동차(이륜자동차) 중 260cc이하 자동차 (2대까지는 지생보 심의 불필요)
(5)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자동차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6)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가 발급되는 자동차
(7)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불법명의 자동차
(8) 급여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처분 예정인 자동차로 보장기관이 인정한 자동차

※ 상기 (4)~(8)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1대인 경우("(4)" 이륜자동차는 2대까지)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없이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가능

※ 상기 (4)~(8)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대 이상 복수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에는 보유 한도의 제한을 두지 않음

※ 상기 (5)~(8)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행정기관(차량등록사업소나 국토교통부 등)이 이미 수급(권)자가 동 자동차를 실제 운행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자동차나, 행정적으로 말소처리만 되지 않은 자동차이므로 보유 한도의 제한을 두지 않은 것임

(1)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가)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중형 이하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나)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다)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전방조종자동차

※ 전방조종자동차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에 따라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전장)의 4분의 1이내인 자동차

- 다마스, 라보, 봉고(화물형봉고제외),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등(카니발, 카렌스, 싼타모, 갤로퍼, 스타렉스, 카스타, 무쏘, 렉스턴, 싼타페, 쏘렌토 등은 전방조종자동차가 아님)

(라) 적재적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

(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포함)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배기량 2,500CC 미만 자동차 (스타렉스, 그랜드카니발 등)

(2)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자동차

(가)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중형 이하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차령 산정은 년(年)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규칙」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최초등록일(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확인가능)과 연식 중 빠른 날짜를 적용. 예를 들어, 최초등록일(연식보다 빠른 경우)이 '10.5.1인 경우 '20년 1월이 되면 10년 이상 된 자동차로 분류

(나)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중형 이하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중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 병원치료가 필요하나 건강상태 및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 거동 곤란이란 보장구가 있어도 스스로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타인의 도움 없이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

※ 질병·부상으로 자동차 소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구원의 건강상태 및 병원소재지, 자동차 이용 실태 등 종합적인 고려를 통하여 자동차 소유가 불가피한지 여부 확인

(다)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3) 소형이하 승합·화물자동차(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경형 또는 소형 화물·승합차)에 해당하는 것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4)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260CC 이하 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중형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5)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자동차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로 보장기관이 인정한 자동차

※ 교통범칙금, 자동차세 미납 등 행정적으로 압류 기록이 있으나 수급자가 동 자동차를 실제 운행 가능한 경우에는 동 조항을 적용하지 않음에 유의

(6)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가 발급되는 자동차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제7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7) 소유자의 요청·동의에 의한 불법명의 자동차

(가) 보장기관이 수급(권)자 명의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명령"이 기재되어 소위 대포차임을 인정한 자동차

(나) 운행정지명령 : 불법명의자동차 소유자가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민원실 또는 인터넷으로 운행정지를 요청하거나, 불법명의 자동차 신고에 따라 운행정지에 동의하는 경우에 시·도 또는 시·군·구청장이 운행정지명령 가능

(다) 처분결과 : 운행정지명령 절차가 완료되면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명령"으로 표기됨

(라) 보장기관이 아래 두 가지 사항을 확인한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로 인정 가능

①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명령”이 기재 되어야 함

② ㉮ 정기검사 3회 이상 미필, ㉯ 의무보험 6개월 이상 미가입, ㉰ 교통범칙금 50회 이상 미납, ㉱ 자동차세 6회 이상 미납 중 1가지 이상의 사실이 있음을 확인

(8) 급여 신청일(또는 기존 수급자의 소명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처분 예정이거나 생업용으로 전환 예정인 자동차. 단, 처분 또는 전환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반재산으로 환산하지 않음

(가) 신청인과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인정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시 매매의뢰 관련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처분 및 생업용 전환예정이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나) 2개월 이내에 미처분 또는 생업용으로 미전환시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하고, 실제 2개월 내에 미처분 또는 생업용 미전환시 해당 가구 특성을 감안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장비용 징수 여부 결정

* 생업용으로 전환예정인 경우 “가)-(2) 생업용자동차” 요건에 해당하는 자동차여야 함

(9)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자동차로 인해 보장이 곤란한 가구의 자동차로,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반영하기로 한 경우

-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경우는 수급(권)자가 소유한 자동차가 (4)~(8)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나 그 자동차로 보장이 불가능한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4)~(8)와 동일하게 보유대수의 제한을 두지 않음
- 보장기관은 수급(권)자가 소유한 자동차가 (4)~(8)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일반재산 환산율을 부과하려면 그 특별한 사유를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시 사실조사 담당자 보고서 등으로 보고 필요

※ 예를 들어, 자동차 분실·도난 자동차로 ‘차량도난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보장기관의 사실 확인 후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가능

라. 기타 산정되는 재산

1) 개념

-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수급(권)자가 보유하고 있던 일반재산(주거용 재산 포함),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 및 처분(매매, 금융재산감소 등)한 경우

- 증여 및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타 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가액을 소진시까지 수급(권)자 본인 재산으로 산정

  * 타 재산 증가분 : 타 재산 구입, 부채상환금

  ** 본인 소비분 : 의료비, 교육비, 위자료 지급금, 법원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재산 처분, 재산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

기타 산정되는 재산 =
증여 및 처분한 재산의 가액 – (타 재산 증가분 + 본인 소비분 + 자연적 소비금액)

※ 일반(주거용)재산, 자동차재산을 증여 및 처분한 경우는 기타(증여)의 "일반"으로 입력하고, 금융재산을 증여 및 처분한 경우는 기타(증여)의 "금융"으로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

- 사회보장급여 부적합 통지를 받은 자가 재산을 처분한 후 재신청하거나, 기존 자격자가 재산 감소를 이유로 변경신고하는 경우에 기타재산으로 산정하여 처리

2) 조사방법

• 타 재산 증가분 확인

- 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 : 새로 취득한 재산의 유형을 확인하여 재산으로 산정

  * 주택을 매각하여 전세계약 체결 → 임차보증금을 재산으로 산정

- 부채를 상환한 경우 : 부채로 산정된 범위 내에서 부채를 상환한 금액
- 재산 처분 후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에 대하여 상환한 금액

  ※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에는 부채로 인정하지 않음. 따라서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을 부채로 보아 그 상환액을 타 재산 증가분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

- 재산 처분 후 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1년 이내)의 신용대출(카드론)에 대하여 상환한 금액

  ※ 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1년 이내)의 신용대출(카드론)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에는 부채로 인정하지 않음에 유의

• 본인소비분 확인

① 본인 및 가구원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사용액 확인

- 진료비, 약제비(한약포함),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복지용구 구입 등에 사용된 금액

  * 증빙서류(간이세금영수증은 불인정) : 진료(약제)비 납입확인서와 납입영수증 등, 장례식장 및 혼례식장 영수증(장소사용 비용)

② 본인 및 가구원의 교육비 사용액 확인

- 학원비, 등록금 등 본인 및 가구원의 교육을 위해 사용된 금액

  * 증빙서류 : 학원비영수증, 등록금납입영수증 등

③ 이혼에 따른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 지급 여부 확인

- 이혼 시 본인의 재산을 감소시켜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로 지급한 경우, 해당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 지급금을 차감(단, 재산 분할 청구로 인해 소득·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 가압류, 가처분 사실만으로는 불인정)

  * 증빙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등기부, 계좌이체내역서 등

④ 법원 경매 또는 공매에 따른 처분 재산 확인

- 법원에 의한 경매 또는 공매된 경우, 배당표 등을 통해 확인된 처분 재산을 신청자의 재산에서 산정 제외

⑤ 재산 처분·취득에 따른 세금 납부금 확인

- 재산 처분·취득에 따른 세금 납부금(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을 확인하여 그 금액만큼 차감

  * 증빙서류 : 납세증명서, 세금 납부 영수증

• 자연적 소비금액 확인

- 타 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항목으로 확인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경과 개월수를 반영한 금액을 차감

  * 자연적 소비금액 등 반영 시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출된 금액이 음의 값인 경우 '0'으로 처리

-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50%를 매월 차감

  * 2015년 12월 이전 기간의 적용은 "해당 연도 최저생계비의 120%"씩 차감

7 부채

- 정의 : **임대보증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 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누적액,**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중 미상환액**

- 부채 인정범위

구 분	세부내용
금융회사 대출금	- 제1금융권 : 특수은행, 일반은행, 지방은행 - 제2금융권 : 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여신금융회사(카드회사, 캐피탈회사, 리스회사, 할부회사, 신기술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 대부(중개)업체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업체로, 금융위원회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서비스에서 조회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의 누적액	-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지자체, 국가보훈처, 공적연금기관, 근로복지공단, 주택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대출금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한국해비타트(사)에서 집짓기 사업을 지원받아 주택을 소유한 수급(권)자의 상환 대상 지원금으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채가 확인된 경우 * 이 경우 매월 지원금의 일정액을 상환하고 있으므로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지원금 상환액을 확인하여 부채액 조정 필요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확인해 준 부채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확인해 준 부채라 하더라도,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차감 적용하지 않으며,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확인된 부채와 중복 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확인 부채를 우선 반영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소방공제회 등
개인간 부채(사채)	법원 판결문(지급명령, 지급결정 포함), 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임대보증금	-

- 재산가액 차감대상 부채금액
  - 임대보증금,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누적액은 전액 차감
  -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부채는 부채의 용도를 확인하여 사용처가 확인된 부채를 차감

    * 부채의 용도 : 의료비, 학비, 주거부채, 일반부채, 타 재산의 증가

8 소득인정액 산정

가.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나. 소득평가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유인요인 - 그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

1) 그밖에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는 금품(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만성질환자 3개월 이상 지출 의료비, 중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법령에 의한 지원 및 본인부담), 희귀난치성질환자 호흡보조기 대여료·기침유발기 대여료 및 간병비·특수식이 구입비 등 (17쪽 〈2유형군 소득재산조사 표준화 목록〉 참고)

2) 근로유인요인

- 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 (그밖의 유형별 근로·사업소득 항목은 27쪽 〈나. 근로활동 등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참고)

3) 그밖에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는 금품(추가적인 지출요인)

- 국민연금에 가입한 수급(권)자의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된 고지서에 따른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 농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상환액 중 이자비용 50%
- 농어업인가구가 자부담한 15만원 이내의 보육시설 이용비용
- 보장가구원 중 대학생(34세 이하, 1년 이내 휴학생 포함) 등록금을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에서 지출한 경우의 해당 지출금액

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기본재산액-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1) 기본재산액

• **개념** :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적용금액** : 지역별 전세가격(최저주거면적 전세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되, 가구규모와 관계없이 다음 금액을 적용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 **기본재산액 공제방식**

-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하고, 공제결과 기본재산액이 남는 경우에도 자동차가액에서는 공제를 하지 않음

2)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및 산출방식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구 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환산율	월 1.04%	월 4.17%	월 4.17%	월 100%

3) 재산범위 특례

• 근로 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 재산가액만 상승한 가구 등 관련 재산범위특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를 준용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의 경우 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경우라 하더라도 보장기관장의 결정으로 '재산가액만 상승한 가구' 특례를 적용하여 1년간 추가 보장 가능

서 식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53

[별지 제1호의5서식]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신청서 57

[별지 제6호서식]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결정(대상제외) □변경·정지·중지·상실 통지서 58

[별지 제12호서식] 이의신청서 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차상위계층 확인서 62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1.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4쪽 중 1쪽)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실거주지 주소[1] :)					휴대전화[2]	
							전자우편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미동거사유)	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전화번호 (집/직장)
							직업	직장명	

1. 배우자 관계[3]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2. 외국여권 소지자명[4]: _____, _____
3. 국외출생자명[5]: _____, _____ 4. 복수국적자명[6]: _____, _____

부양의무자[7]	수급권자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가구원수	전화번호
	의					
	의					
	의					
	의					

급여계좌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8]

통지방법	[ ] 서면 [ ] 전자우편(E-mail)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기타 ( )

작성방법

1)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주소를 모두 기재
2) 원활한 결과 통지를 위해 신청인 휴대전화번호 정확하게 기재
3),4) 해당자에 한함
5),6) 아동수당,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신청대상에 한함
7) 부양의무자 조사 사업 해당자에 한함(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8) 동일보장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디딤씨앗계좌(CDA) 또는 압류방지통장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보장구분	사회보장급여 내용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자가 [ ]임차[9] [ ]기타[10])	
	[ ]교육급여 (바우처 제공)	※ 유의사항 - 20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는 현금이 아닌 바우처(사회서비스 이용권)로 제공됩니다. - 교육급여 수급권자로 보장결정된 이후,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https://e-voucher.kosaf.go.kr)을 방문하여 바우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대상자 이름 :) [ ]양육수당(대상자 이름 :), ([ ]가정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아동수당	[ ]지급대상아동이름: ① ② ③	
아동 · 청소년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①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② 급식(중식)비 ③ 고교학비지원 ④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유해차단서비스) [PC 신청 여부 : [ ]신청 [ ]미신청] [인터넷통신사 [ ]KT [ ]SK브로드밴드 [ ]LG U+ [ ]SK 텔레콤 [ ]기타( )] [인터넷 가입(예정)자 성명 : , 주민번호 :] *(필수) 본인 관련 정보를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 기관(PC 설치업체, 인터넷통신회사)에 제공 동의[ ]
	[ ]소년·소녀가정 보호비 [ ]청소년특별지원([ ]연장신청)	
노 인	[ ]기초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장 애 인	[ ]장애인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 ]차상위 부가급여) [ ]장애수당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한부모 가족	[ ]한부모 가족지원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급여지급, 증명서 발급)	
기 타	[ ]차상위계층 확인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차상위 자활급여 [ ]시설이용·입소 [ ]자산형성 [ ]타법 의료급여[11] ( ) [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 의뢰 및 연계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신청

자격구분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생계 [ ] 의료 [ ] 주거 [ ] 교육) [ ] 차상위계층 [ ] 장애인 [ ] 한부모가족 [ ] 기초연금			
감면 서비스	전체 신청	[ ] ※ 전체서비스 (대행)신청 시 체크		
	선택 신청	[ ] 전기요금	[ ] TV수신료 면제	[ ] 휴대전화요금
		[ ] 지역난방요금	[ ] 도시가스요금	[ ] 시내 · 외유선전화요금

※ 아래항목 작성 시 신속·정확하게 요금감면대상 확인이 가능하며,
미 작성 및 부정확한 정보를 작성 시 감면서비스 (대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기 고객번호 : · 지역난방 열사용자번호 : · 이동통신사 [ ]KT [ ]SK 텔레콤 [ ]LG유플러스
- 도시가스 (사용계약자명 : 사업자명 : 고객번호 :)
- 시내 · 외유선전화 (계약자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자: [ ]KT [ ]SK브로드밴드 [ ]LG유플러스)

가구원 추가 기재 (휴대전화 요금할인 신청시)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휴대전화 번호	이동통신사
가족 사항					[ ] KT [ ] SK 텔레콤 [ ] LG 유플러스
					[ ] KT [ ] SK 텔레콤 [ ] LG 유플러스
					[ ] KT [ ] SK 텔레콤 [ ] LG 유플러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 인 (√ 체크)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기초생활보장과 초중고 교육비지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정보, 영유아 및 한부모 가족은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노인 및 장애인은 본인 및 배우자 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급여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공사, 시내 · 외유선전화사업자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요금감면 (대행)신청 및 요금감면 대상 자격변동 여부 확인

☐ **제공할 개인정보 범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고객번호

☐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 · 이용 기간**: 요금감면대상 자격상실 후 5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시 요금감면 (대행)신청이 제한됩니다.

[ ]

선택적 동의	동 의 (√ 체크)
1.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차상위 자격이 확인되었으나, 위탁 심사결과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등록장애인일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장애수당 신청일로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3.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모두 신청한 것에 동의합니다.	[ ]
4.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경우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급여)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전부 중지된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5.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수급 중 소득이나 재산 등이 변동된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6.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가능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금융 · 신용 · 보험정보 등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단,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한부모 가족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자산형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에 한함)	[ ]
7.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한 경우 만2세 연령 도래시 양육수당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유 의 사 항	확 인 (√ 체크)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 · 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복수국적발생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요건이 향후 변경되는 경우(부양의무자 또는 그 가구원의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 · 상실 또는 지급 정지, 장애정도 하향조정 등)에는 같은 법에 따른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조사를 위한 서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6. 요금감면 (대행)신청을 한 경우 관련한 결정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TV 수신료 및 전기요금 : 한국전력공사, 휴대전화요금 : 이동통신사, 도시가스요금 :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비감면 : 지역난방공사 시내 · 외유선전화요금 : 시내 · 외유선전화사업자	
7. 맞춤형 급여 안내는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안내해 드리기 위한 것으로, 실제 사회보장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 거부 의사가 없으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는 가구 단위로 신청되며, 가구원은 주민등록전산정보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를 통해 안내된 사회보장급여는 정보통신망에서 조회된 공적자료 위주로 확인한 결과이므로 실제 신청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신청인과 가구원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제출 여부에 따라 안내의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기초생활보장 신청 후 전기 · 도시가스 · 지역난방 · 등유 등 구입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안내 및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읍 · 면 · 동 에너지바우처 담당부서(산업부서 등)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선택적 동의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12] 성명 : (서명 또는 인)

(배우자 동시신청 시)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 교육감 귀하

9) 민간 · 공공임차, 사용대차, 공동생활가정 거주자,
10) 가정위탁(입양대상), 보장시설, 타 법령 우선지원 주거시설, 공공운영 공동생활가정 등,
1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12)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서식

<table>
<tr><th colspan="4">안 내 사 항</th></tr>
<tr><td>신 청
기 간</td><td colspan="3">-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인 경우 출생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 · 일요일 ·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에 신청하여야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td></tr>
<tr><td>처 리
기 한</td><td colspan="3">- 14일 : 유아학비, 양육수당(연장시 30일)
- 30일 : 기초생활보장(연장시 60일), 아이돌봄서비스지원(연장시 60일), 기초연금(연장시 60일), 장애인연금(연장시 60일), 청소년특별지원, 부모급여(연장시 60일), 아동수당(연장시 60일), 한부모가족(연장시 60일)
- 60일 : 초 · 중 · 고 학생 교육비 지원(연장시 90일)</td></tr>
<tr><td rowspan="9">관 계
법 률</td><td colspan="2">보장구분</td><td>해당 법률</td></tr>
<tr><td colspan="2">기초생활보장</td><td>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초 · 중등교육법, 주거급여법</td></tr>
<tr><td colspan="2">영유아</td><td>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지원법</td></tr>
<tr><td colspan="2">아동 · 청소년</td><td>초 · 중등교육법, 학교 밖 청소년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아동수당법</td></tr>
<tr><td colspan="2">노인</td><td>기초연금법</td></tr>
<tr><td colspan="2">장애인</td><td>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td></tr>
<tr><td colspan="2">한부모가족</td><td>한부모가족지원법</td></tr>
<tr><td colspan="2">기타</td><td>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발제한구역법</td></tr>
<tr><td colspan="2">신청시 구비서식</td><td>추가 제출서류</td></tr>
<tr><td>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 · 중 · 고 학생 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13]),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차상위계층 확인)</td><td>소득 · 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금융정보등제공 동의서
(별지 제1호의3서식)</td><td rowspan="2">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 · 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통장 유효성을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 (보호자 부재 · 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9. 노숙인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10.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서류
11.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12. 자산형성 신청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자산형성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13.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거급여 임차수급권자에 한함)
14. 복수국적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 외국여권 사본1부(외국여권소지자), 국내여권 사본 1부(국내여권소지자)
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15.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1부
단, 국내여권이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td></tr>
<tr><td>노인, 아동 · 청소년, 기타(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산형성)</td><td>소득 · 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td></tr>
<tr><td>제출하는 곳</td><td colspan="2">관할 시 · 군 · 구청(읍 · 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단, 기초연금 지급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가능</td></tr>
</table>

13)「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5서식] <개정 2022.1.1>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신청서

자 격 구 분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생계 [ ] 의료 [ ] 주거 [ ] 교육) [ ] 차상위계층 [ ] 장애인 [ ] 한부모가족 [ ] 기초연금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감면 서비스	전체 신청	[ ] ※ 전체서비스 (대행)신청 시 체크					
	선택 신청	[ ] 전기요금		[ ] TV수신료 면제		[ ] 휴대전화요금	
		[ ] 지역난방요금		[ ] 도시가스요금		[ ] 시내·외유선전화요금	

※ 아래항목 작성 시 신속·정확하게 요금감면대상 확인이 가능하며,
미 작성 및 부정확한 정보를 작성 시 감면서비스 (대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기 고객번호 : ◦ 지역난방 열사용자번호 : ◦ 이동통신사 [ ]KT [ ]SK 텔레콤 [ ]LG유플러스
◦ 도시가스 (사용계약자명 : 사업자명 : 고객번호 :)
◦ 시내·외유선전화 (계약자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사업자: [ ]KT [ ]SK브로드밴드 [ ]LG 유플러스)

가구원 추가 기재 (휴대전화 요금할인 신청시)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휴대전화 번호	이동통신사
가족사항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요금 감면 및 복지자원 연계를 (대행)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의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본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공사, 시내·외유선전화사업자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및 복지자원 연계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고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를 상기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고객번호 등)
2. 복지대상자 요금감면을 받을 경우, 자격변동 내용을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요금감면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본 감면 신청과 관련한 결정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TV 수신료 및 전기요금 : 한국전력공사, 휴대전화요금 : 이동통신사, 도시가스요금 :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비감면 : 지역난방공사, 시내·외유선전화요금 : 시내·외유선전화사업자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1.1> (5쪽 중 1쪽)

사회보장급여 [ ] 결정(적합) [ ] 결정(대상제외) [ ] 변경·정지·중지·상실 통지서

신청인/세대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청내용	신청구분		급여·서비스내용	
비고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관계	차상위 계층	생년월일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2. 귀하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사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가능 사업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나 읍·면·동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거주지역, 세대구성,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이후에도 자격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5쪽 중 2쪽)

[ ] 대 상 제 외

신청내용	보 장 구 분		급여·서비스내용	
대상제외 사유	[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초과 [ ] 수급자격심의결과 수급자격 미인정		[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 [ ] 기타( )	
안 내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사회보장급여의 실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이후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장애, 질병, 거동불편 등 개인 또는 가구여건 등의 변화 등의 변동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할 경우(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의 경우 영아가 24개월 미만일 경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의 경우 여성청소년이 만9세 이상 만24세 미만일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보장기준에 적합할 시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변경·정지·중지·상실

[ ] 변 경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 용
	사유	[ ] 아동보호를 위한 보호자변경 [ ] 소득·재산·임대차계약·근로능력 변동 [ ] 가구원의 사망·출생·현역입대·교정시설 수용 등의 가구원 변동 [ ] 가구원의 전·출입 등 거주지 변동 등 [ ] 조제분유 추가지원 [ ] 기타( )
[ ] 정 지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 용
	사유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 해외체류기간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경우 60일 이상) [ ]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 ] 보장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 기타( )
[ ] 중 지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 용
	사유	[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초과 [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 [ ] 보장시설입소, 교정시설 수용 등 주거실태의 변동 [ ] 최근 6개월간 통산 90일초과 해외체류(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의 경우 해외체류기간 60일 이상, 유아학비의 경우 해외체류기간 31일 이상) [ ] 보호대상자의 급여 중지 요청 [ ] 보장기관 등의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가 의료기관에 30일을 초과하여 입원중인 경우 [ ]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활동지원급여와 유사한 급여를 받는 경우 [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 서비스를 2개월 연속 이용하지 않은 경우 [ ]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 3月이상 월차임을 연체 [ ] 기타( )
[ ] 상 실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 용
	사유	[ ] 사망 [ ]「기초연금법」제3조제3항,「장애인연금법」제4조제3항에 따른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 ]「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아동의 수급연령 초과(생후 96개월이 되는날) [ ] 부모급여 수급연령 초과(생후 24개월이 되는달) [ ] 국적상실 [ ] 국외이주 [ ] 소득·재산 등 선정기준 초과 [ ] 장애정도의 변경으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의 경우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미해당 [ ]「난민법」제18조에 의한 난민인정자 중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 ] 기타(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5쪽 중 3쪽)

비 고	※ 처리기한 경과사유 등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등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을 말함)에게, 시·도지사 또는 시·도교육감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

   2)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3) **장애인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4) **기초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5) **아동수당**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6)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의 경우 20일 이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의 경우 20일 이내)

   7) **차상위계층 확인 :**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

   8)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해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위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수급기간 중 인적사항 및 소득·재산 변동, 지급정지 사유의 소멸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시·군·구(읍·면·동)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 당 자 : 직급 성명

문의 전화번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3.1.1>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리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신청인과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				
처 분 내 용		[ ] 선정 [ ] 보장변경/중지/정지/상실 [ ] 환수 [ ] 기타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		년 월 일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연월일		년 월 일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 「기초연금법」 제22조, 「장애인복지법」 제84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의료급여법」 제30조제1항, 「장애인연금법」 제18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8조, 「아동수당법」 제19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구비서류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아동수당 관련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안내사항

1.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교육급여의 경우 시·도교육감)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에게 송부합니다.
   다만, ① 기초연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이내),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에 대한 이의신청은 60일 이내(30일 범위 내 연장가능), ③ 한부모가족지원 및 장애인복지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30일 이내, ④ 장애인연금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⑤ 장애인활동지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30일 범위 내 연장가능), ⑥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단,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이내), ⑦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방과후활동지원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⑧ 영유아보육지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⑨ 아동수당지원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이내)이내, ⑩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관련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결정통지 처리합니다.
2.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의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경우에는 직접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를 말한다)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3.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보장기관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처리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15.4.20.>

차상위계층 확인서			처리기간 즉시
성명 (대상자)		생년월일	
주소 (소재지)			
세대주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용 도			
제 출 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발급번호 제 호

위와 같이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질의응답

MINISTRY OF HEALTH & WELFARE

질의 응답

Q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 처리기한은?

A

- 차상위계층 확인 보장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다만, 금융조회 처리기한 소요 등 부득이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 금융재산 조회가 필요한 가구 등 기한 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신청서 작성 시 민원인에게 처리기한에 대한 별도 안내 필요

Q 차상위계층은 어떤 복지서비스 혜택이 있나요?

A

- 정부양곡 할인, 통신·전기 요금할인, 국가장학금 신청 등 혜택이 주어지며 자세한 내용은 부록의 '2024년 중앙부처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 안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Q 가구구성원 확정 시 사실혼 관계 및 사실이혼 관계 인정 여부

A

- 사실혼 관계는 인정하나, 사실이혼 관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다만,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사례별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 조사 등을 거쳐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 배우자와 혼인관계 유지상태이나 10년간 별거 중이며 다른 가족과도 왕래 없이 혼자 살고 계심. 공공근로 등 일자리 신청을 위해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신청 →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나 가구의 소득상태 등 확인조사 후 개인만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부 록

2024년 중앙부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안내

MINISTRY OF HEALTH & WELFARE

차상위계층 자격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1 생계 지원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기부식품등 제공	●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 푸드뱅크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기부식품등을 제공하거나 대상자가 직접 매장(푸드마켓)에 방문하여 필요한 기부식품등을 선택 * 기부식품등: 식품 및 생활용품	● 사업장이 속해 있는 해당 시·군·구 및 읍·면·동에 확인	보건복지부
아동 급식 지원 (지방이양사업)	●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시·군·구 아동급식위원회를 구성하여 급식대상, 급식단가, 급식방법 등 결정	● 온라인(복지로) 신청 ●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보건복지부
양곡할인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의 60%~90% 할인 지원	●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영양플러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중 빈혈 등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신부, 출산수유부, 만 6세 까지(생후 72개월)의 영유아	●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지원하는 교육 및 상담	●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층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만15~39세)	● 본인이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1:3 정액 매칭 지원, 3년 만기 시 1,440만원(+이자) 수급 가능(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 온라인(복지로) 신청 ●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보건복지부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 ● 장애아동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2급 및 3급 중복) *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	● 장애수당 : (시설)월 6만원, (재가)월 4만원 ● 장애아동수당 : - 중증장애인 월 9~22만원 - 경증장애인 월 3~11만원	● 전국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보건복지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 (신규 장애인등록 심사의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 ● (재판정 장애심사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 (직권 장애심사의 경우) 모든 장애인 대상	● (진단서 발급비용)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 4만원 - 기타장애 : 1만 5천원 ● (검사비) 장애정도 심사용 검사비 지원 - 10만원 범위 내 지원 (진단서발급비 별도)	● 거주지 관할 지자체 (읍·면·동)를 통해 신청	보건복지부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기저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및 기준중위80% 이하의 장애인·다자녀(둘째이상)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의 경우 등에 지원	● 기저귀(월8만원)·조제분유(월 10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	● 영아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주민센터에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복지로)	보건복지부
차상위 자활근로	●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 직접일자리 및 급여제공 (일 8시간, 시장진입형 기준 월 급여 약 160만원)	● 거주지 관할 지자체 (읍·면·동)를 통해 신청	보건복지부
희망복지지원단 관리사업	●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차상위 빈곤가구,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빈곤예방 지원 가능 가구	● 서비스 연계(단, 연계할 수 있는 적절한 서비스가 없는 경우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등 지원)	● 거주지 관할 지자체 (읍·면·동)를 통해 신청	보건복지부
차상위계층 통신요금 감면	● 차상위계층 대상	● 소득이 낮은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이동전화요금 감면 - 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감면(월최대 21,500원, 가구당 4인까지)	● 통신요금감면 전용센터 (☎1523) ● 복지로 (www.bokjiro.go.kr) . ● 정부24(www.gov.kr) ●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또는 지역주민센터 방문신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학교우유급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학생, 특수교육대상자, 교육비 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 학기중(공휴일제외) 및 방학, 250일 내외 * 방학의 경우 여름방학 24일, 겨울방학 48일 의미	● 학교별 신청 및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 6~18세의 아동 및 청소년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유제품 구매가 가능한 바우처 카드 지원	●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전기요금 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상이자, 유공자, 차상위계층 등	● 전기요금 할인 * 기초생활(월 1.6만원 한도, 하계 2만원 한도) * 장애인·유공자(월 1.6만원 한도, 하계 2만원 한도) * 차상위(월 8천원 한도, 하계 1만원 한도) * 상세한 지원내용은 한전고객센터로 문의	● 한국전력공사 지사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한전사이버지점 포털사이트(cyber.kepco.co.kr)통해 신청 * 한전고객센터(☎ 123)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요금 경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독립유공·상이자, 다자녀가구	● 도시가스요금 한도내 경감(※ 취사·난방용 기준) * 차상위계층 - 에너지이용권 비수급자: 동절기(12~3월) 148,000원, 그 외 4,950원 -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동절기(12~3월) 86,000원, 그 외 4,950원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 - 동절기(12~3월) 18,000원, 그 외 2,470원	● 지역도시가스 고객센터로 우편·방문 접수 신청, ·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로 경감 접수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열요금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장애수당, 자활근로, 차상위계층 확인), 한부모 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가구 등	● 열요금 할인 * 기초생활수급자(월5천원~1만원) * 차상위계층(월 5천원) * 장애인, 유공자(월 5천원) * 다자녀가구(월 4천원)	● 한국지역난방공사 (www.kdhc.co.kr) 홈페이지 '에너지 복지요금 - 요금감면 신청하기'로 인터넷 접수 * 한국지역난방공사 (☎1688-2488)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미소금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 (창업예정자 포함) 및 취약계층	●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 운영자금 및 취약계층자립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 연 2~4.5%의 저금리로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및 미소금융재단·지역법인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소득 대비 채무가 과다하여 연체가 되거나 연체될 우려가 있는 등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 (연체 30일 이하)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6개월), 연체이자감면, 원리금분할상환(최장10년) ● (연체 31~89일) 연체이자감면, 금리인하, 원리금분할상환(최장10년) ● (연체 90일 이상) 이자전액감면, 원금감면(최대 70%), 원금분할상환(최장10년)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	금융위원회
풍수해보험 사업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보험목적물 '주택(동산포함)' 가입 시	● 풍수해보험료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86.5%~, 차상위계층 77.5%~ ※ 지자체에서 추가지원 시 최대 92%까지 지원	● 지자체 및 민간보험사를 통해 가입	행정안전부
농업인 안전보험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15~87세의 농업인 - 일반농가 - 영세농가(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농작업 중 발생한 재해를 보상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 영세농가의 경우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70% 지원 (일반농가는 50%)	● 지역 농·축협으로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어업인 안전보험	● 어업, 양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87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 ● 영세어업인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어작업 중 발생한 재해를 보상하여 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료 지원 ● 영세어업인의 경우 보험료의 70% 지원 (일반어업인은 50%)	● 지역 수협 회원조합 및 영업점으로 문의	해양수산부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월 15회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알뜰교통카드 전용 카드 및 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를 지급해주는 제도로서,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대중교통요금 마일리지 추가 적립 가능 * 각 1회 교통요금 지출액 - 2천원 미만 : 최대 500원 적립 가능 - 2천원~3천원 : 최대 700원 적립 가능 - 3천원 이상 : 최대 900원 적립 가능	● 알뜰교통카드 발급 후, 알뜰교통카드 회원 가입 신청 * 알뜰교통카드 고객센터 (☎031-427-4415)	국토교통부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 출·퇴근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 월 7만원 한도 내에서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실비 지원 - 버스,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기차, 자가용 주유비, 유료도로 등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신청(1588-1519)	고용노동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양육비 미지급으로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기간 : 9개월(최대 3개월 연장 가능)	●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여성가족부
양육비 이행 확보	●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 이혼·미혼 양육 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 확보 소송, 채권 추심, 면접 교섭서비스 등 지원	●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여성가족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만24세 이하 청소년부모로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3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	●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여성가족부
(보훈)생계지원금	● 80세이상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수당대상자 본인과 특수임무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유족	● 월 100천원	● 관할 보훈(지)청 신청 (☎ 1577-0606)	국가보훈부
(보훈)생활지원금	●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 월 345천원	● 관할 보훈(지)청 신청 (☎ 1577-0606)	국가보훈부

2 의료 지원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노인 실명예방 안검진 및 개안수술	(안검진) 만60세 이상 노인(저소득 노인 우선 선정) (개안수술) 만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백내장(눈시력 0.3이하), 망막질환, 녹내장 등 안질환자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지원한도) 1안당 수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 개안수술과 관련없는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입원료 등 비급여 항목, 외래진료비, 개안수술 지원 결정전 수술비용 등 제외	시군구 보건소 신청	보건복지부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무릎수술)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으로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간병비 및 상급병실입원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지원대상자 통보전 발생한 검사비,진료비, 수술비 등 지원 제외	시군구 보건소 신청	보건복지부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 영유아	기초(의료·주거·생계)수급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그 외 건강보험 가입자 : 최대 20만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보건복지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9~24세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전자바우처 지원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및 앱 신청	여성가족부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취약계층(저소득, 한부모 가정, 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 지원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1,500개소), 이 중에 열악한 가구/시설을 대상으로 실내환경 개선 지원(500개소)하되, 환경성질환 소아·청소년 및 어르신 진료지원 (200명)	지자체를 통해 지원신청 (지자체 -> 환경부로 지원대상자 추천)	환경부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기후변화 취약계층(저소득, 독거노인, 어린이 등) 및 취약가구 밀집지역 내 취약시설(어린이집, 경로당, 도서관, 재래시장 등)을 관리하는 기관 등	취약계층 : 폭염대응을 위한 차열페인트 도장(지붕, 벽면) 등 취약계층 밀집지역 : 폭염·한파 대응을 위한 적응시설 (그늘막, 결빙취약지 열선 등) 설치	지자체를 통해 지원신청	환경부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9세~18세 청소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공존질환 검사 결과,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원인으로 우울증, ADHD 등이 발견된 청소년	종합심리검사, 병원 연계 및 치료비 지원 - 일반계층: 40만원 이내 진료비 지원 - 저소득·취약계층: 60만원 이내 진료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한부모·조손가족 등	학교에서 이용습관 진단조사 등을 통해 선별, 대상자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관리 * 청소년전화(☎ 1388)	여성가족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인 경우에만 지원되는 의료지원사업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	희귀난치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부양의무자 기준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경감 : 의료급여와 유사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건강보험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 지원 건강보험료 지원 :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액 국고지원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보건복지부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 1차 외래진료시 일부 지원 2,3차 외래진료시 및 1,2,3차 입원시 전액 지원 * 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급 단,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 본인부담식대비 약제비 미지원	● (건강보험공단)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또는 의료급여 2종 여부와 장애정보를 요양기관(정보미당)에 제공 ● (의료기관) 진료 시 정보미당을 통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유형 또는 의료급여2종 및 장애여부 확인 후 장애인의료비 지원 처리	보건복지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 만족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중 희귀질환자	● 간병비(97개 질환), 특수식이 구입비(28개 질환 등) 지원	● 주민등록관할 보건소에 신청 ●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 온라인 신청	질병관리청

3 교육 지원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국가장학금 (Ⅰ유형)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가구의 대학생 ※ B학점 이상(단, 기초·차상위는 C학점 이상, 신입생 및 장애학생, 자립준비청년은 성적 기준 미적용)	● (지원금액) 등록금 범위 내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 학자금지원 1~8구간은 연간 최대 570~350만원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을 통해 신청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교육부
다자녀 (세자녀 이상) 장학금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 기초·차상위~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세자녀 이상 가구의 미혼인 대학생 *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대학생 ※ B학점 이상(단, 기초·차상위는 C학점 이상, 신입생 및 장애학생, 자립준비청년은 성적 기준 미적용)	● (지원금액)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 학자금 지원 1~8구간 첫째, 둘째는 연간 570~450만원, 셋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 지원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을 통해 신청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교육부
대학생 근로장학금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 기초·차상위~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가구의 대학생 ※ C학점 이상	● (지원단가) 교내근로의 경우 시간당 9,860원, 교외근로의 경우 12,220원 ● (지원범위) 학기당 520시간/ 주당 학기 중 20시간, 방학 중 40시간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신청 *한국장학재단(☎ 1599-2290)	교육부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 저소득층(기초, 한부모, 차상위) 가정의 중1~고3 학생 ※ 당연 지원 대상은 아니며 선발될 경우 지원 ※ (SOS장학)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긴급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학업 지속이 곤란한 학생	● 2024년 사업계획 별도 안내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안내 예정 ● 대학 졸업 시까지 매월 장학금* 및 교육 프로그램(멘토링, 멘토링 캠프) 등 지속 지원 * 장학금 매월 25~45만원 지원 ※ (SOS장학) 위기 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한 지원임을 고려하여 10개월 한시 지원	● 소속 학교에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시스템(eduman.kosaf.go.kr)을 통해 신청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교육부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파란사다리	◦ 소득분위 5분위 이내의 학생 또는 장애학생, 탈북학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보호종료아동,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소년 등 취업 취약계층 대학생 중 선발학기 재학생 ※ 당연 지원 대상은 아니며 선발될 경우 지원	◦ (연수 내용) 언어 교육, 기본 소양교육 등 사전교육 → 국가별 4~5주 간 해외 연수 → 진로 멘토링 등 귀국 후 관리 ◦ (지원 내용) 항공료, 보험료, 교육비, 일부 현지 체류비 등 포함 학생 1인당 평균 400만원 내외 * 파견 국가 별 물가수준 고려 차등지원	◦ 권역별 사업 주관대학에 문의 후 신청 * 권역별 주관대학 선정 현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교육부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드림장학금)	◦ 저소득층 학생(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중 해외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우수 고교생	◦ (유학준비생 유형) 국내장학생(고2 ·고3) 50명 대상/ 학업장려비 지원 ◦ (유학생 유형) 유학준비생 유형 장학생 중 '드림장학금 장학위원회'에서 선발한 해외대학 진학자/ 연간 최대 6만 USD 이내(학비, 체재비), 항공료 별도(2년 내 5천 USD 이내, 4년 내 총 1만 USD 이내) 지원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를 통해 신청 * 한국장학재단(☎ 1599-2290)	교육부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유예	◦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 졸업생(만 35세 이하) 중 아래 사유로 인해 상환이 어려운 자 * 부·모의 사망, 부·모의 파산·면책·개인회생 결정, 본인이 수급자, 본인의 장애, 차상위계층 등	◦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최대 3년) 후 무이자 분할상환(4년)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를 통해 신청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교육부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및 이자면제	◦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 (학부생) 기초·차상위 및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의 만 35세 이하 - (대학원생) 기초·차상위 및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의 만 40세 이하	◦ 등록금 소요액 전액* 및 생활비(연 400만원) 저금리 대출 지원 ('23.2학기 현재 1.7%) * 대학원생은 총 한도 있음 ◦ 연간소득이 일정수준('23년 기준 연 2,525만원) 이하인 경우 상환 유예 ◦ 기초·차상위 학생은 재학 중 등록금·생활비 대출이자 면제 * 생활비대출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를 통해 신청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교육부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국가장학금 중복수혜 불가	◦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 교재비(1인당 연간 35만원)	◦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 (www.lllcard.kr)를 통해 신청 * 평생교육 바우처상담센터 (☎1600-3005)	교육부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사업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 사립유치원 재원 시 추가 학부모 부담금 범위 내 월 최대 20만원 지원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	교육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 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 1만원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1만원 - 6·7급 공무원 채용시험: 7천원 - 8·9급 공무원 채용시험: 5천원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서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	인사혁신처

4 주거 · 돌봄 지원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수선유지급여가구 제외),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지자체장 추천)	● 저소득가구의 에너지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및 냉방기기 등 지원	● 관할 시·군·구를 통해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농촌집고쳐주기	● 농촌지역(읍·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 취약계층	● 취약계층의 노후·불량주택 수리 지원 – 가구당 650만원 한도, 노후·불량 정도가 심한 경우 840만원까지 지원 등	● 거주지 관할 시·군을 통해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가사간병 방문 지원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만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신체수발·건강·가사·일상생활 지원	●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등	● 직접서비스(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및 연계서비스(생활, 주거, 건강 지원 연계 등)	●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 및 복지로를 통해 신청	보건복지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 65세 이상 독거노인, 노인2인가구 조손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혹은 생활여건,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한 인원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혹은 생활여건,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한 인원	● 대상자 가정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화재감지기, 활동량감지기 등 ICT 장비 설치 지원	● 거주지 관할 서비스 수행기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 및 대리인 신청가능	보건복지부
방과후 보육료 지원	● 만12세 이하의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 중 초등학교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 지원	● 일반아동 월 10만원, 장애아동 월 279,000원 지원	●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정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가사활동 지원, 정서 지원 등	● 주민등록관할 보건소에 신청	보건복지부
발달재활 서비스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장애등록되지는 않았지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전문의가 인정한 경우 서비스 이용 가능	● 장애아동 1인당 月 25만원 상당(자부담 포함)의 바우처 제공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 차등 지원)	●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보건복지부
언어발달 지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	● 아동 1인당 月 22만원 상당(자부담 포함)의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제공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 차등 지원)	●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보건복지부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 (돌봄서비스) 만 18세 미만의 중증 등록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휴식지원프로그램)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으로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 가능,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을 우선 지원	◦ (돌봄서비스) 아동 1명당 연 960시간 범위 내 지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전액지원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가정 : 일부 본인부담(40%) ◦ (휴식지원프로그램) 자조모임, 가족치료·상담, 부모교육 등	◦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 42개 품목 무료교부(지원기준액 내) - (지체·뇌병변·심장) 보행차, 식사보조기구, 목욕의자, 전동침대,안전손잡이,휠체어용 보행기, 피더시트, 소변수집장치, 낙상알림기 등 31품목 - (시각)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 확대비디오(독서확대기), 문자 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등 7품목 - (청각)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 등 4품목 ◦ 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	◦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보건복지부
장애인 활동지원	◦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 활동지원급여와 특별지원급여를 합산하여 매월 바우처 제공 * 차상위 활동지원급여(본인부담금: 정액(20천원), 특별지원급여 본인부담금: 면제	◦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의 가정의 해당 서비스별 욕구기준에 충족하는 자 (서비스별 특성에 따라 상이)	◦ 이용자가 신청한 사회서비스의 이용권(바우처)을 제공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원	◦ 돌봄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 아동 * 시설별 신고정원의 50% 이상은 우선돌봄아동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다문화·한부모·조손가구의 아동 등) 배정	◦ 아동보호(안전교육, 급식), 교육(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정서적 지원(상담, 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지역연계(인적·기관연계) 프로그램 운영 ※월~금요일을 포함해 주 5일, 1일 8시간 이상 상시운영	◦ 지역아동센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보건복지부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 (드림스타트)	◦ 0세 ~ 12세 (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 임산부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정 등	◦ 가정방문을 통한 주기적 상담실시,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통합서비스 지원 ◦ 건강(치과)검진, 예방접종, 언어치료, 기초학습, 체험활동, 심리검사 및 치료, 부모교육, 방역서비스, 가족상담 및 치료 등 제공	◦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보건복지부
초등돌봄교실	◦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다자녀·다문화 가정 등의 초등학생	◦ 돌봄서비스 프로그램 무료 제공, 교육비 지원 대상학생 급·간식 무상 제공	◦ 학교별 돌봄교실 신청	교육부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지원	◦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보훈대상자 중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이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60%이하인 경우 등	◦ 노후복지업무근로자가 재가서비스 지원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취사·세탁·청소 등 집안 내 가사 활동 및 식사수발, 병원동행 등 건강관리 지원, 산책·심부름·말벗 등 편의지원	◦ 대상자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국가보훈부
아이돌봄 지원	◦ 맞벌이, 취업 한부모, 부모의 장애, 다자녀가정 여부, 부모의 장기입원, 재학, 취업준비 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 ◦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른 소득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액 차등 지원 - 수급자, 차상위 지정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무관하게 '가'형으로 지원	◦ 시간제 돌봄(연 960시간) :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보육시설 등·하원 동행 등 돌봄서비스 제공 ◦ 종일제 돌봄(월 80~200시간) 36개월 이하 아동 대상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돌봄제공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 : www.bokjiro.go.kr) 을 통해 신청 * 온라인신청은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만 가능	여성가족부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 방과후 돌봄(활동)이 필요한 청소년(초4~중3) * 우선순위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조손, 다문화, 장애가정, 2자녀 이상 가정, 맞벌이 가정의 청소년	◦ 다양한 체험활동, 진로·직업교육, 보충학습지원, 급식, 상담, 캠프 등	◦ (초등)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및 유선신청 (중등) 방문 및 유선신청 * 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 (www.gov.kr)에서 신청 ** 방과후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운영기관 확인 가능 (www.youth.go.kr/yaca)	여성가족부

5 문화 · 법률 등 기타 지원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산업기능요원 배정시 우선순위 부여	◦ 국가기술자격증이 있는 직업계고 졸업자 등의 현역입영대상자로서 지정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세부조건 : 매년 5월중 고시	◦ 현역 배정인원 일정 범위내 경제적 약자 우선순위 배정 * 지정업체에서 인원 배정 신청 (매년 6월) →병무청에서 지정업체에 인원 배정(매년 12월)	◦ 지정업체에서 추천권자에게 배정신청	병무청
취업맞춤특기병 학력조건 완화	◦ 현역입영대상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학력 제한 완화 (고졸이하 → 대학 학력자도 지원가능) * 단, 고용노동부 주관 기술훈련은 대학 마지막 학기에 참여가능	◦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민원안내-'경제적 배려대상자 지원대상 여부 확인신청'에서 접수 *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복무 중 겸직허가	◦ 복무기관에 겸직허가신청서 및 수급자격 증빙서류 제출	병무청
차상위계층 무료법률구조사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법률상담, 민·가사 사건 등 소송대리, 형사변호 무료지원 (단, 민·가사 사건의 경우 승소가액 3억 이하인 경우만 무료지원 가능)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출장소, 지소 방문신청(위치 문의 및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2번)	법무부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서민	◦ 채권·채무, 근로관계, 임금, 상속·유언, 이혼, 친권, 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법률상담 등	◦ 전국 65개 배치기관 (지자체 또는 사회복지협의회)으로 전화예약(평일 10시~17시) 또는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상담예약	법무부
통합문화이용권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세 이상 (2018.12.31. 이전 출생자)	◦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 및 체육활동, 음반·도서 구입 또는 국내 여행 시 사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 개인(카드1매) 당 연간 13만 원	◦ 읍·면·동 주민센터 및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또는 모바일 앱([공식]문화누리카드)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문화체육관광부
과학문화바우처	◦ 2024년 사업계획 별도 안내 ※ 과학문화바우처 온라인 포털(scivoucher.kofac.re.kr)을 통해 안내 예정	◦ 2024년 사업계획 별도 안내 - 과학공연, 전시·체험, 도서, 교구, 강연·교육 등 과학문화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바우처 발행	◦ 과학문화바우처 온라인 포털(scivoucher.kofac.re.kr)을 통해 신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록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 등록 시각·청각 장애인(복지부) 및 등록 눈·귀 상이등급자(보훈부)	◦ 시각·청각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방송매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방송수신기 보급 –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대상자에게 우선 보급(선정 후 보급)	◦ 시청자미디어재단 또는 홈페이지(tv.kcmf.or.kr)를 통해 신청 * 상담전화(☎ 1688-4596)	방송통신위원회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수급자, 장애아동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본인 소유 KB국민카드에 포인트 충전(1인당 10만원)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에서 숙박비,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으로 사용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홈페이지 (www.forestcard.or.kr) 또는 우편신청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모바일 신청(개인) 가능	산림청
스포츠강좌 이용권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만 5~18세 유·청소년 – (1순위) 신규 및 동 사업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 (2순위) 신규 및 동 사업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 (3순위) 동 사업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 (4순위) 동 사업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 취약계층 유·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 12개월간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시·군·구 주민센터 및 스포츠강좌이용권 포털사이트 (svoucher.kspo.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국민체육진흥공단 (☎ 02-410-1298~9)	문화체육관광부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가구당 소화기, 화재경보기	◦ 거주지 관할 소방서를 통해 신청	소방청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장애인, 학생, 소기업,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 다문화가족, 한부모 가족, 청년창업자, 가구 기준중위소득 125%인 자	◦ 지재권 상담, 지재권 출원 서류작성, 지재권 심판·심결취소소송 대리, 지재권 침해사건에 대한 민사소송 비용지원 등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방문 또는 전화(☎ 02-6006-4300), 홈페이지(www.pcc.or.kr)	특허청

별도의 지원기준이 있는 취약계층 지원사업

1 생계지원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긴급복지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중한질병 등)가 발생하여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소득·재산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소득 및 재산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4인 기준 429.7만원), 재산기준(대도시 241백만원, 중소도시 152백만원, 농어촌 130백만원)/ 주거용재산 공제한도 :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금융재산(6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 주거, 의료,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4인가족 월간 종류별 지원액 > 종 류 / 생계 / 주거(대도시) / 복지시설 / 의료 지원액 / 183만 / 66.2만 / 149만 / 300만(1회) * 가구원 규모에 따라 지원수준 상이 * 기타 부가급여로 교육비, 연료비(10월 ~3월),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지원	◦ 관할 시·군·구 긴급복지 담당자 또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지원요청 또는 신고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2023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02만원 · 부부가구 323.2만원 *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 등은 제외	◦ 2024년 월 최대 단독가구 333,840원, 부부2인 가구 534,140원 지급(연말 물가 상승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전국단위 신청 가능 - 지자체(읍·면·동)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 수급자격: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23년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이하인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자인 경우 등은 제외	◦ 월 최대 40.2만원 지급(기초급여 + 부가급여) - 기초급여 :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 또는 감소에 따른 소득보전 급여로서 월 최대 32.2만원 지급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보전 급여로서 소득계층에 따라 월 2~40.2만원 지급	◦ 전국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보건복지부
(보훈)생활조정수당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유족 ◦ 생활수준조사 실시 * 단,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3급이상 상이보훈대상자 미실시	◦ 3인이하 가족 242천원 4인이상 가족 300천원	◦ 관할 보훈(지)청 신청 (☎ 1577-0606)	국가보훈부
근로장려세제 (EITC)	◦ 가구 구성별로 부부 연간 총소득기준* 미만으로 전년도 6.1.기준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인 경우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 가구원 구성별 (단독) 최대 165만원 (홑벌이) 최대 285만원 (맞벌이)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	◦ 정기신청(5.1.~5.31.), 기한후 신청(6.1.~11.30.) 기간에 ARS (1544-9944), 손택스(모바일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전국 세무서 방문 신청	국세청
자녀장려세제 (CTC)	◦ 전년도 12.31.기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며, 부부연간 총소득기준 7,000만원 미만이고 전년도 6.1.기준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인 경우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정기신청(5.1.~5.31.), 기한후 신청기간 (6.1.~11.30.)에 ARS (1544-9944), 손택스(모바일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전국 세무서 방문 신청	국세청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국민취업지원제도	◦ (1유형) 15~69세 저소득층 -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재산 4억 이하 - 단, 청년층(18~34세 이하)은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원 재산 5억 이하 ◦ (2유형) 1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및 특정계층은 소득 무관	◦ (공통) 수급자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1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월 최대 40만원) 추가 6개월간 지원 *미성년자, 70세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 (2유형) 훈련참여시 최대 6개월 동안 취업활동비용 월 최대 28.4만원 지원 등	◦ 온라인 (www.kua.go.kr)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고용노동부
공공산림 가꾸기	◦ 만18세 이상으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 참여제한 : 최대3년간 2년이상 참여자,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자	◦ 공공산림가꾸기 활동에 참여 시 1일 7만 8,80원~8만 6,880원(4대 보험 본인부담금 공제)의 급여 지급 * 월 근무시간: 160시간, 근무기간: 약 10개월	◦ 시군 산림부서 또는 국유림관리소 방문 신청 ◦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한 신청 등	산림청
산림복지 일자리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사업별 선발기준에 적합한 자 * 취업취약계층, 여성 참여자 우대	◦ 취업 취약계층·여성의 선발 우대를 통한 일자리 제공 및 임금지원 - 주40시간 근무, 10개월 단기 고용, 월200만원 가량 임금 지급(4대 보험 본인부담금 공제 후 급여는 달라질 수 있음)	◦ 산림청 소속기관 및 시·도, 시·군·구의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 일모아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산림청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거주자로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	◦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대상으로 세대별 100만원 한도로 지급	◦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별도 공고	국토교통부
새희망홀씨	◦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인 사람 ◦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사람	◦ 생계자금을 연 10.5% 이내의 금리로 최대 3천5백만원까지 대출	◦ 전국 14개 은행에 신청	금융위원회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 1인 이상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저소득(기준중위소득의 60%) 여성가장으로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	◦ 임대보증금(5천만원 한도, 연2%대 고정금리, 최대 지원기간 6년(최초 2년, 2회 연장 가능)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국 17개 지회로 문의 (우편·방문 접수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만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한부모가족증명서는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 만18세 미만 자녀의 아동양육비(월21만원) * 고등학교 재학 시 만 22세 미만까지 지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35세 이상 미혼 모·부의 만5세 이하 자녀, 월5만원 - 만 25~34세 이하 청년한부모의 만 5세이하 자녀, 월 10만원 - 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만 6~18세 미만 자녀, 월 5만원 ◦ 중고생 학용품비(연 9.3만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생활보조금(월 5만원)	◦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	여성가족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만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가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한부모 아동양육비(월35만원), 자립지원촉진수당, 검정고시 학습비 * 0~1세 자녀의 경우 아동양육비 월 40만원	◦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	여성가족부
청소년 특별지원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 위기청소년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생활(기초생계비, 숙식제공 등), 건강(진찰·검사 등), 학업(입학금 및 수업료 등), 자립(기술습득 및 진로상담 비용 등), 상담(심리검사비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 법률(소송 및 법률상담비용 등), 활동(수련·문화활동비 등), 기타 지원(교복지원 등)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신청 가능	여성가족부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새일여성인턴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등록한 경력단절여성등 * 새일여성인턴 사업에 취약계층(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등) 우선 연계	● 근속장려금 60만원 지급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상용직으로 채용되어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 가까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방문·상담(☎1544-1199) * 홈페이지 (saeil.mogef.go.kr)	여성가족부
근로자햇살론	●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 ●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20% 이하로 신용이 낮고 담보가 없어 은행 이용이 어려운 근로자	● 근로자 햇살론 : 2,000만원 내 ● 사업자 햇살론 : 운영자금 2천만원, 창업자금 5천만원, 고금리 채무 대환자금 3천만원 이내	● 서민금융회사(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전국지점 및 협약 보험사에 신청	금융위원회
햇살론15	●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인 사람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인 사람	● 금리 15.9%, 한도 2,000만원 내 ● 3년 또는 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표준화된 증빙서류 구비가 어려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모바일 앱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특례보증 신청 가능 ● 성실상환 시 우대금리(1년마다1.5%p~3%p, 최대 6%p까지 우대) 적용 가능	● 전국 14개 은행 지점, 카카오뱅크 및 7개 은행 모바일 앱(신한, 우리, 기업, 하나, 전북, 부산, 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 서민금융진흥원 App	금융위원회
햇살론유스	●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 ● 만 34세이하 ● 취업준비생 또는 중소기업에 1년 이하 재직중인 자	● 한도: 1,200만원 내(일반생활자금의 경우 연간 600만원 한도) ● 금리: 3.6~4.5%(보증료 0.1~1% 포함)	● (보증신청) 서민금융진흥원 App ● (대출신청) 협약 은행 창구 및 APP	금융위원회
햇살론뱅크	● 정책서민금융상품을 6개월 이상 이용 ●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자 ●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20% 이하인 자	● 한도: 2,500만원 내 ● 금리: 4.9~8%대(보증료 1~2% 포함)	● 협약은행의 창구 또는 App	금융위원회
햇살론카드	● 연 가처분소득 600만원 이상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KCB 또는 NICE 기준) ● 신용카드 미보유자 대상	● 한도: 200만원 내	● (보증신청) 서민금융진흥원 App ● (카드신청) 협약 카드사 신청채널	금융위원회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15 등 정책서민금융 이용이 어려워 대부업·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최저신용자 대상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인사람	● 금리 15.9%, 한도 1,000만원 내 (최초 이용 시 최대 500만원 이내,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가능) ● 3년 또는 5년(거치기간 1년 별도선택 가능)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보증신청) 서민금융진흥원 App ● (대출신청) 협약 은행 및 저축은행의 창구 또는 App	금융위원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	●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어선의 소유자 (원양어선, 수산물·해상화물 운송 어선 제외)	● 본인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톤급별로 차등 지원 - (어선원보험) 10톤 미만 71%, 30톤 미만 63%, 50톤 미만 39%, 100톤 미만 31%, 100톤 이상 15% - (어선보험) 10톤 미만 71%, 20톤 미만 63%, 20톤 이상 15% * 지자체별로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	● 관할 수협 회원조합 영업점 또는 Sh수협은행 방문·문의 (☎1588-4119)	해양수산부

2 의료지원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국가암검진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당해 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 기준(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하위 50%)에 해당하는 자	● 의료급여수급자는 전액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는 본인부담분 10%(90% 공단부담) 지원	● 각 연도 암검진 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에 따라 선정 및 안내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감경	● 65세이상 또는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미만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중 감경적용 기준에 해당되는 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시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라 본인부담금 40% 또는 60% 감경(본인부담금 재가 15%, 시설 20%)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선정되어 별도 신청없음. 제외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지사 신청	보건복지부
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 요양등급(1~5등급,인지등급) 판정을 받은 보훈대상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서비스 이용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이하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등	● 보훈대상별, 감경사유별 본인부담금의 40~80% 지원	● 대상자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국가보훈부
치매 검진 지원	● (선별검사)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 (진단 감별검사) 선별검사상 인지저하(필요시 '정상' 결과인 자 가능)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선별검사) 전국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 실시 ● (진단검사) 전국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 실시 또는 협약병원 실시 및 검사비 일부 지원 ● (감별검사) 협약병원 실시 및 검사비 일부 지원	● 치매안심센터(보건소)에 신청	보건복지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재산 7억원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중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 미적용 급여]의 80% * 단, 특실이용료, 보장구, 효과 미검증 고가치료법 등의 의료비, 미용·성형 등 제외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방문 신청	보건복지부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 한부모가족의 만 13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 중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중위소득 63%이하) -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자	● 부양자 : 24시간 상해 후유장해, 질병 후유장해 ● 아동 : 상해·질병 입원일당, 골절진단비, 암진단비, 수술위로금,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 위로금, 식중독 입원 일당, 폭력피해 위로금	● 한부모가정의료보험 보험금 접수센터 - 전화: 02-3471-5116 - 팩스: 070-4758-9556 - 이메일: fjclaim@fjins.co.kr - 카카오톡채널: 서금원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접수센터	금융위원회

3 주거 · 돌봄 지원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국민임대주택 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 저소득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 거주를 할 수 있도록 국민임대 주택 공급	● LH, SH, 지자체 등	국토교통부
기존주택 전세임대·융자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자산기준 충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인 장애인(자산기준 충족)	● 저소득층이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고, 사업시행자(LH·지방공사)가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임대 - 전용 85m2이하 다가구·다세대 및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	● 관할 시·군·구로 신청	국토교통부
다가구 매입임대 출·융자 (기존주택 매입임대)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자산기준 충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인 장애인(자산기준 충족)	● 도심 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	● 관할 시·군·구로 신청	국토교통부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영구임대 주택공급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 및 자산기준 충족	● 저소득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을 공급(사업승인)	● 관할 시·군·구로 신청	국토교통부
장기전세 임대주택공급	● (우선공급)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다자녀,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일반공급)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전용 60㎡ 이하) * 해당기관별로 기준이 다를 수 있음	● 월임대료 부담이 없는 전세형 주택을 최장 20년간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	● LH, SH, 지자체 등	국토교통부
통합공공임대 공급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등 사회취약계층 등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통합공공임대 주택 공급	● LH, SH, 지자체 등	국토교통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차상위계층 저리융자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주택도시기금의 전세대출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한 가구	● 기본금리 대비 1%p 금리 우대 * 금리는 보증금 및 소득 구간별 상이	●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 (enhuf.molit.go.kr) ● 방문 신청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	국토교통부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 입소이용료 지원	● 중위소득 이하의 실비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	● 1인당 월 294천원	●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가 관할 지자체(시·군·구)를 통해 신청	보건복지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등록장애인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 지원 가능)	●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포장), 경사로 설치 등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지원 (가구당 최대 380만원)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국토교통부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 등록장애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 구입비용 지원 - 일반대상자는 보조기기 가격의 80% 지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는 보조기기 가격의 90% 지원	● 접수기간 중 관할 시·군·구 접수처 또는 인터넷(www.at4u.or.kr)을 통해 지원 신청 * 상담전화(☎ 1588-267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온가족보듬사업	● 자녀를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 혼인 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미혼모·부자 등 가족역량강화가 필요한 가족	●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양육, 취업 등 각종 정보를 안내하고 정부서비스 연계 등 사례관리(상담, 출산·양육지원, 멘토링, 자조모임, 교육문화 프로그램,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 가족센터(☎1577-9337), 가족상담전화(☎1644-6621)	여성가족부
	● 한부모·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및 청소년(한)부모, 1인가구 등 가족역량 강화가 필요한 가족 ● 사고·재난 등 위기상황에 직면한 긴급위기가족	● 심층 사례관리 및 상담, 자녀 학습·정서 지원, 생활도움 지원,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 사고·재난 등 위기상황에 직면한 가족 대상 심리상담, 생활도움 등 긴급 위기지원		
일상돌봄서비스	●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세), 가족돌봄청년(13~39세)	● 재가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2024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안내

발 행 인 보건복지부

발 행 처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홈 페 이 지 보건복지부 www.mohw.go.kr
복 지 로 www.bokjiro.go.kr

발 간 일 2024년 1월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디 자 인 ㈜어진기획
(044)414-9700